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1.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음.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베트남 관세총국 및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함.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함.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둠.

목 차

I. 개관	1
1. 일반 개황	1
2. 경제 개황	3
가.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3
나.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3
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동향	6
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	10
4.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12
5. 베트남의 AEO 제도(DNUT)	14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6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1	16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	18
가. 수입 관세 정책(Import policies)	20
나.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20
III. 베트남의 통관환경	23
1. 통관 행정 개요	23
가. 통관 행정 조직	23
나. 각종 수입허가 제도	25
다. 수입 제한 제도	29
라.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국세	32

다. 관세 면세 제도	36
2. 베트남의 통관 절차	37
가. 수입 통관 절차	37
나. 수입 화물 검사 제도	40
다. 수출 통관 절차	41
라. 관세 납부 유예 및 환급 제도	42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43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44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44
나. 애로 사례	44
다. 업무상 유의점	45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49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49
나. 애로 사례	50
다. 업무상 유의점	52
3. 면세의 적용	54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54
나. 애로 사례	54
다. 업무상 유의점	55
4. 수입 신고 수리 이후 단계	56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56
나. 애로 사례	56
다. 업무상 유의점	57
5. 수출 및 환급 단계	57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57

나. 애로 사례	58
다. 업무상 유의점	59
부록	60
부록 I. 비즈니스 팁	60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65
부록 III. 베트남 관세청법	69
부록 IV. 베트남 수출·수입세법	110
부록 V. 베트남 소비세법	126
부록 VI. 물품 라벨링 규정	134
참고문헌	166

표 목차

<표 I-1>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3
<표 I-2>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4
<표 I-3> 2010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5
<표 I-4> 2010년 베트남의 국별 수출입 현황	6
<표 I-5> 對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실적(2010.12.21 기준 누계)	7
<표 I-6> 對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2010.12.21 기준 누계)	8
<표 I-7> 최근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투자현황	9
<표 I-8>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9
<표 I-9> 최근 對베트남 교역량 및 무역수지	10
<표 I-10> 2010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순위	10
<표 I-11> 최근 對 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11
<표 I-12> 최근 對 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12
<표 I-13>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13
<표 II-1> Doing Business 2011 상 베트남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17
<표 II-2> 베트남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17
<표 III-1> AIL 대상 주요 품목 예시	26
<표 III-2> 2011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30
<표 III-3> WTO 가입 전 후 베트남 평균 수입관세율	33
<표 III-4>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예시	34
<표 III-5> Channel 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 신고 시)	40
<표 IV-1> 베트남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43

그림 목차

[그림 Ⅲ-1] 베트남 관세 행정 조직도	24
[그림 Ⅲ-2]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38

I. 개관

1. 일반 개황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남북으로 약 1,6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북부 지역은 아열대성, 남부 지역은 열대몬순기후를 나타냄
 - 연평균 기온은 24.1℃(북부 23.2℃, 남부 27.1℃)이며, 습도는 월평균 83%, 연평균 강우량은 우리나라보다 2.4배 많은 2,151mm임

- 현재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8개의 성(省)과, 그와 같은 급인 5개의 직할시(하노이, 껀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인 하노이(Hanoi)는 베트남의 북부에 위치하고, 가장 큰 도시는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임

-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며,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2008년에는 UN의 최빈국 기준¹⁾을 탈피하는 성과를 거둠

- 베트남의 총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8,857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1.7배 정도이며, 국토면적은 33만 1,051km²로 남한의 3배를 초과함
 - 베트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 노동자 비중은 2010년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22.4%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임업 종사 노동자수는 2010년 48.2%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높은 편임

1) UN의 최빈국 기준은 1인당 GDP 960달러이며, 베트남은 2008년 1인당 GDP 1,052달러를 기록함

- 베트남의 화폐단위는 동(Dong/VND, 2011. 11월 기준 20,980동/1달러)이며,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불교가 약 70%, 카톨릭이 약 10%를 차지함

- 과거 베트남은 1859년부터 95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바 있어 도처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건물, 음식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1955년부터 20년간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는 우리나라 군인 32만 명이 파병되기도 하였음
 - 문화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큰 대조를 이룸

- 베트남은 1995년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음
 - 현재 ASEAN의 가입국은 총 10개국으로, 베트남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임

- 베트남은 2007년 1월, 150번째 WTO 가입국 지위를 얻음
 -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 무엇보다 수출 실적이 향상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음
 - 과거 베트남 외국투자는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건설, 철강 등 기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인프라 및 원자재 산업 개발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주요 현안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동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물가 불안, 외환 부족, 전력 부족 등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한-ASEAN FTA와 별도의 양자 협정으로 한-베트남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2. 경제 개황

가.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 베트남은 세계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0년 6.78%의 경제 성장을 보였으며, GDP 1,046억 달러를 달성하였음
- 국제통화기금(IMF)의 2010년 자료 기준으로 베트남은 세계 GDP 순위 중 제58위에 올랐음

<표 1-1>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경상 GDP(억 달러)	710	895	915	1,046
1인당 GDP(달러)	843	1,052	1,064	1,203
경제성장률(%)	8.46	6.31	5.32	6.78
물가상승률(%)	12.6	22.97	6.88	9.19
실업률(%)	4.64	4.65	4.60	4.43
대미달러환율	16,109	16,583	18,119	18,932**
수출(억 달러)	485.6	626.9	571.0	716.3
수입(억 달러)	627.6	807.1	699.5	840.0
무역수지(억 달러)	-142	-180.2	-128.5	-123.7
외환보유(억 달러)	210	230	141	124

주: *는 추정치, **베트남 중앙은행(SBV) 2010년 연말 기준환율

자료: KOTRA,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09, WB

나.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6%, 수입은 약 21%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은 다소 감소함

<표 1 -2>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교역량	69,208.2	84,717.3	111,326.1	143,398.9	127,045.1	156,993.1
수출	32,447.1	39,826.2	48,561.4	62,685.1	57,096.3	72,191.9
수입	36,761.1	44,891.1	62,764.7	80,713.8	69,948.8	84,801.2
무역수지	-4,314.0	-5,064.9	-14,203.3	-18,028.7	-12,852.5	-12,609.3

주: *는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 점차 1차 상품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섬유류를 비롯하여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의 수출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섬유·직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신발, 수산물, 원유, 전기·전자 제품과 부품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음

- 또한, 베트남의 수출 호조로 인해 부품 및 중간재 수입의 증가, 또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의 수요 증가로 철강제품 수입이 증가해 철강 제품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부상함
 - 수입 품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장비·부품이며, 철강과 정유, 의류, 컴퓨터 전자부품·부분품 등의 수입이 많음

<표 1-3> 2010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섬유·직물	11,209.68	기계·장비·부품	13,691.15
2	신발	5,122.26	철강	6,154.84
3	수산물	5,016.30	정유	6,077.58
4	원유	4,957.58	직물	5,361.52
5	컴퓨터, 전자제품·부분품	3,590.17	컴퓨터, 전자제품·부분품	5,208.60
6	나무, 목제품	3,435.57	플라스틱 제품	3,776.38
7	쌀	3,247.86	직물, 옷, 가죽, 신발 부자재	2,621.03
8	기계·장비·부품	3,056.56	비금속(Base metal)	2,523.49
9	귀석, 귀금속과 제품	2,823.97	동물 사료	2,172.52
10	고무	2,388.23	화학약품	2,119.04

주: 2010년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금액 기준 2010년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상대국은 미국이었고 그 외에 일본, 중국, 우리나라 순으로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짐
- 베트남으로 가장 큰 수입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그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는 지난 해 베트남의 2번째 거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나 1위인 중국과는 수입액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남
- 베트남은 교역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 지난 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對 미국 수출액 141.7억 달러로 의존도 20%, 對 중국 수입액은 199.2억 달러로 의존도 24%를 보임

<표 1-4> 2010년 베트남의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미국	14,238.13	중국	20,018.83
2	일본	7,727.66	한국	9,761.34
3	중국	7,308.80	일본	9,016.09
4	한국	3,092.23	대만	6,976.93
5	호주	2,704.00	태국	5,602.28
6	스위스	2,651.99	싱가포르	4,101.14
7	독일	2,372.74	미국	3,766.91
8	싱가포르	2,121.31	말레이시아	3,413.39
9	말레이시아	2,093.12	인도네시아	1,909.19
10	필리핀	1,706.40	인도	1,762.03

주: 2010년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동향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이후 3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3년 간의 투자 금액은 WTO 가입 이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WTO 가입 후 3년 간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총 4,098여 건, 전체 투자등록금액 1,141억 5000만 달러로, 이 금액은 2001~2006년 대비 3.5배, 1988~2006년 대비 1.4배 높은 수치임

-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는 누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총 12,213건, 총 1,929.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누계 투자 금액 기준, 국가별로 우리나라(약 221.32억 달러)가 대만(약 228.14억 달러)에 이어 제2의 투자국임
- 2010년 연간 기준으로는 싱가포르(약 43.50억 달러), 네덜란드(약 23.64억 달러), 일본(약 20.40억 달러)에 이어 우리나라(약 20.38억 달러)가 4위의 투자국이었음

<표 1-5> 對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실적(2010.12.21 기준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1	대만	2,146	22,814.4	9,655.1
2	한국	5,650	22,132.8	7,693.8
3	일본	873	21,723.2	6,450.7
4	말레이시아	1,397	20,836.0	5,783.7
5	싱가포르	364	18,344.8	3,948.2
6	미국	481	14,450.3	4,564.3
7	버진아일랜드	556	13,076.0	3,205.1
8	홍콩	606	7,792.1	2,790.2
9	케이만 아일랜드	52	7,432.2	1,474.4
10	태국	238	5,811.4	2,502.9

자료: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국가 정보

- 2010년 말까지 누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업종은 제조·가공업이었으며, 그 뒤로 부동산, 호텔·외식 서비스, 건설업 순으로 조사됨
- 2010년 연간 기준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이 가장 많은 투자금액(67억 달러)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어 제조업,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업, 호텔·외식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편중이 매우 높았음

<표 1-6> 對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2010.12.21 기준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1	제조, 가공	7,305	93,975.8	31,980.8
2	부동산경영	348	47,995.1	11,595.1
3	호텔, 외식서비스	674	11,508.7	3,680.7
4	건설	295	11,383.1	2,968.5
5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63	4,870.4	1,115.4
6	정보통신	636	4,758.4	2,936.4
7	예술, 오락	123	3,461.2	1,014.9
8	물류, 운수	300	3,179.5	1,001.2
9	농·임·수산	479	3,080.7	1,497.2
10	채광	68	2,939.8	2,347.1

자료: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국가 정보

- 발전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음
 - 최근에는 신기술 및 친환경적업 분야 투자에 다양한 특혜 제도를 두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음
 - 과거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였던 공단지역·수출입가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감면 혜택 등이 폐지되었음

- 1992년 한-베트남 국교 수립 이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11년 2월 현재 2,707개 기업이 활동 중이고, 업종별로는 섬유 및 봉제, 신발, 전기·전자, 부동산 개발업에 주로 진출하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표 1-7> 최근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신고금액	송금횟수(건)	투자금액
2007년	932	457	2,802,472	2,343	1,310,932
2008년	879	315	1,914,652	2,378	1,376,836
2009년	696	173	942,272	1,659	602,271
2010년	831	233	2,158,938	1,833	851,378

주: 법인은 현지 법인과 지점, 지사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투자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가 신고 금액과 투자 금액이 증가하며 신고 건 수 역시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1-8>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2010 순위	투자 업종	2010년		2009년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1	제조업	448,923	503	304,452	408
2	광업	155,823	2	147,316	3
3	금융 및 보험업	75,607	10	6,608	15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124	39	21,176	31
5	도매 및 소매업	47,190	73	15,773	44
6	건설업	32,688	87	70,519	77

주: 법인은 현지 법인과 지점, 지사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는 제조업에 다소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급증하였고 건설업 투자 금액은 감소하였음

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

- 2010년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35% 증가한 129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액은 96억 달러를 상회하며 6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냄

<표 1-9> 최근 對베트남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전년대비 증감률,%)	39.27 (14.5)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9.25 (33.1)	13.92 (50.5)	20.37 (46.4)	23.69 (16.3)	33.31 (40.5)
무역수지	30.02	43.68	57.68	47.80	62.21

자료: 관세청 통계

-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무역수지는 지난 1980년 대 이후 30여년 동안 계속 흑자를 지속해오고 있음

<표 1-10> 2010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순위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순위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116,837,833	1	중국	71,573,603
2	미국	49,816,058	2	일본	64,296,117
3	일본	28,176,281	3	미국	40,402,691
4	홍콩	25,294,346	4	사우디아라비아	26,820,002
5	싱가포르	15,244,202	5	호주	20,456,219
9	베트남	9,652,073	9	아랍에미리트연합	12,170,134
10	인도네시아	8,897,299	10	카타르	11,915,450
11	멕시코	8,845,549	28	베트남	3,330,815

자료: 관세청 통계, 2010

- 2009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10위 수출국이었으나 2010년에는 제9위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하였고, 수입에 있어서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우리나라의 28번째로 큰 수입 상대국으로 집계됨
- 2010년 기준 한국의 對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과 석유 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이었으며,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경우에도 3배 이상의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1-11> 최근 對 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순 위	2010년			2011년(1월-10월)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9,652,073	35.0	총 계	10,976,988	42.3
1	철강판	944,000	76.5	무선통신기기	1,276,008	127.1
2	석유제품	830,635	13.6	철강판	1,131,528	55.8
3	무선통신기기	757,964	180.1	석유제품	897,537	20.6
4	합성수지	674,356	35.7	합성수지	674,060	22.8
5	편직물	657,376	15.1	편직물	646,361	19.9
6	자동차	645,752	-23.5	자동차	525,276	1.6
7	자동차 부품	232,297	3.0	반도체	368,330	562.3
8	기타직물	204,336	17.5	자동차 부품	241,332	29.8
9	인조장섬유직물	190,529	24.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3,973	356.6
10	알루미늄	168,529	26.7	기타직물	214,934	29.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와 의류, 석탄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의 경우 석유(원유)와 석탄의 수입액이 베트남으로부터의 전체 수입금액의 약 23%를 초과하여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1-12> 최근 對 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 위	2010년			2011년(1월-10월)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3,330,815	40.5	총 계	4,339,398	65.8
1	원유	586,900	35.4	원유	923,560	109.2
2	의류	378,499	75.0	의류	698,939	137.7
3	석탄	180,199	42.2	신발	199,701	61.2
4	천연섬유사	168,822	72.5	석탄	162,268	7.9
5	신발	155,392	34.5	천연섬유사	146,591	7.6
6	연체동물	124,225	24.0	연체동물	138,153	42.0
7	기타섬유제품	112,098	35.2	기타섬유제품	131,846	49.4
8	목재류	99,158	99.6	목재류	122,575	45.8
9	인조섬유방적사	91,507	14.9	인조섬유방적사	111,980	57.7
10	임산 부산물	89,790	110.2	임산 부산물	98,561	41.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 베트남은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외교정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러시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와 ASEAN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의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평균관세율은 15%²⁾이나, 그러나 지역 간의 FTA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트남도 특정 경제 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은 7개의 FTA를 시행하고 있으며, ASEAN 지역 통합 FTA와는 별도로 칠레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양자 간 FTA를 검토 중에 있음
 - 베트남이 ASEAN 국가로서 참여한 FTA는 ASEAN 국가간의 AFTA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FTA가 있음
 - 베트남 단독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로는 베트남과 일본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있음

<표 1-13>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지역 통합 FTA	양자 간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TA(ASEAN 회원국간 FTA) ○ ACFTA(ASEAN-중국) ○ AKFTA(ASEAN-한국) ○ AJCEP(ASEAN-일본) ○ AIFTA(ASEAN-인도) ○ AANZFTA(ASEAN-호주,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 완료 : VJEPA(베트남-일본) ○ 협상 진행중 : 베트남-칠레

자료: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됨에 따라 한·베트남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음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

2) MFN 관세율은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함, 주로 WTO 협정 세율이 MFN관세율이 됨

3)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음

-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전체의 90%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임

- ASEAN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베트남은 역내 상품 수입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를 실행하여, 2006년 초 관세율이 0~5%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평균 AFTA/CEPT 관세율은 4.7%를 유지하고 있음⁴⁾

-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일본과는 2009년 10월부터 EPA(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되어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5. 베트남의 AEO 제도(DNUT)

- 베트남은 현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를 Doanh Nghiep Uu Tien(DNUT, “우대업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음

- DNUT 제도는 위험도가 낮고, 연간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등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간소화 및 사후심사 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제도로서 향후 약 2년간 시범(pilot)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각국 세관 당국과 MRA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

- DNUT의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이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13일 Circular(시행세칙) No.63/2011/TT-BTC를 제정하였음

4) 외교통상부, 2010

- 본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제14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하여 협의한 바 있음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1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 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1년에 발간된 당해 보고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183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을 수록함
 - Doing Business 2011 보고서 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폐업(Closing a business) 등 9개의 지표임
 -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6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의 무역 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보고서에 이어 2011년 보고서에서도 8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하였음

<표 11-1> Doing Business 2011 상 베트남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베트남	East Asia & Pacific	OECD	태국	필리핀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6	6.4	4.4	4	8	3
수출소요시간(일)	22	22.7	10.9	14	15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555	889.8	1,058.7	625	675	790
수입필요서류(개수)	8	6.9	4.9	3	8	3
수입소요시간(일)	21	24.1	11.4	13	14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645	934.7	1,106.3	795	730	790
무역분야 순위	63	-	-	12	61	8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 Doing Business 2011에서 베트남은 전반적인 사업의 용이성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3국 중 78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지난 해 보다 4순위 하락한 63위를 기록함

<표 11-2> 베트남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구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日)	비용(달러)	소요기간(日)	비용(달러)
서류준비	12	125	12	95
세관통관	4	100	4	95
항만(터미널)	3	150	4	175
내륙운송	3	180	1	280
합계	12	555	21	64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Vietnam」

- 베트남에서의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당) 약 55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2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 당 약 64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1일이 소요됨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1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⁵⁾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1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중 베트남 부분에서 베트남의 관세(Tariffs)와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 지식재산권 보호, 방송 및 통신 분야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과의 교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수출
-
- 5)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 화물 기준이며,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금액을 산정함
- 6)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함에 있어 수입 수량 규제, 수입 허가의 취득 및 자동수입허가 취득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함

- 미국의 45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인 베트남은, 2010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1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적자액은 전년 대비 2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 2010년 미국의 對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37억 달러였으며, 對 베트남 수입액은 149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임
 - 미국의 對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2009년 5억 2,400만 달러로 2008년 4억 7,300만 달러보다 증가하였음

- 2009년 베트남과 미국은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인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하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론회를 가짐
 - 이러한 포럼에서 베트남 WTO 가입 공약의 감시와 실행, 양측의 무역 이슈 사항을 고민과 함께 무역 및 투자 증대 촉진을 위한 것이었음
 - 2008년 6월, 양국은 양자 간 투자 조약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2회의 협상이 진행되었음
 - 2009년과 2010년,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상 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 2009년 12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위한 협상 시작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 협정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잠재적 발판을 마련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제권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수출 확대를 이룰 것임
 - TTP 협상에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됨

가. 수입 관세 정책(Import policies)

-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율 인하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이 수출하는 주요 제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인하하였음

- 관세 인하의 결과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거의 15% 이내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고관세도 존재하고 있음
 - 미국은 베트남의 추가적 관세 인하로써 미국 수출의 성장 가져올 수 있는 품목군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품목에는 신선한 사과, 배와 감귤류(citrus), 아몬드, 가금류 고기, 돼지고기, 치즈, 냉동 감자 제품, 토마토 소스 등이 포함
 - 증류주, 가루차, 영양보충식, 커피 등 일부 음료 제품에도 고관세가 적용됨
 - 또한 베트남은 일부 음식점용 장비와 대형 엔진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높은 세율 적용함

- 2007년 상당수의 품목에 관세인하를 실시한 베트남은, 그 후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고기, 가금류, 자동차, 종이 철강과 비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실행 세율을 인상하기도 하였음

나.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 베트남은 2001년의 미국-베트남 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및 2007년 WTO 가입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였음
 - 그 결과 상당수의 수입 제한이 없어졌으며, 쿼터, 금지, 허가, 사전 승인 요구 등 기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WTO 약정과 불일치하는 제한들을 제거함

- 베트남은 부도덕적인(depraved) 또는 반동을 상징하는 문화 상품, 폭죽 및 특정 어린이 장난감, 중고 소비 제품,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자동차 및 중고 차량용

예비 부분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하고 있음

- 소금, 담배, 달걀, 설탕에 대하여는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체제 하에 수입 수량 제한 및 수입 허가를 요하고 있음

□ 2010년부터 도입된 Circular(시행세칙) 24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류, 음식, 농산물 등)의 하역 전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받도록 요구함

- Circular 24 도입 전 적용되었던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Circular 17로, 이는 식품과 농산물, 의류 등을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품목 확대를 위하여 Circular 24를 도입해야 했음

- 자동수입허가를 득하는데 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며, 수입자는 당해 허가를 얻기 위해 원본 B/L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불가피함

- 또한, 행정적인 부담과 더불어 비용 상의 증가를 가져와 수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베트남은 이 제도를 WTO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사실을 베트남 정부에 문제 제기하여 WTO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음

- 결국 항공 운송의 경우에 B/L원본 제시 없이 자동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나, 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불편한 점은 남아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0년 4월, 1500개가 넘는 품목으로 된 '불필요한 수입품과 소비재'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음

-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의 범위와 지정 목적에 대하여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7) '자동수입허가(AIL)'란 수입 신청에 대해 자동적으로 수입 승인하는 경우를 말하며,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별도의 적절한 수입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도입여건이 지속되는 한 자동수입허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있음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0년, 가격 관리와 등록에 대한 Circular 122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 내리거나 오를 수 없는 광범위한 품목을 설정하여 가격 관리를 행하는 규정임
 -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민간의 제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 규정에서 정한 관리 품목에는 시멘트, 철강, LPG, 화학 비료, 소금, 설탕, 쌀, 종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규정으로 인해 행정 비용의 증가와 업체 수익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 기관과 함께 이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와 이야기할 것임

- 베트남은 2006년 관세법과 관련 실행 규정에 따라 WTO 관세평가협정(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관세 평가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음
 - 그러나 현재까지도 비효율적인 통관 환경은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음

-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수입해야 하는 일부 제한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을 수입할 수 있음

- 베트남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실행 규정에 열거된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그 중 특정 제품에는 소비세법에 따라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기도 함
 - 2010년 1월부터 모든 맥주(포장 형태 무관)와 20% 이상의 증류주에 대하여 일정 종가세율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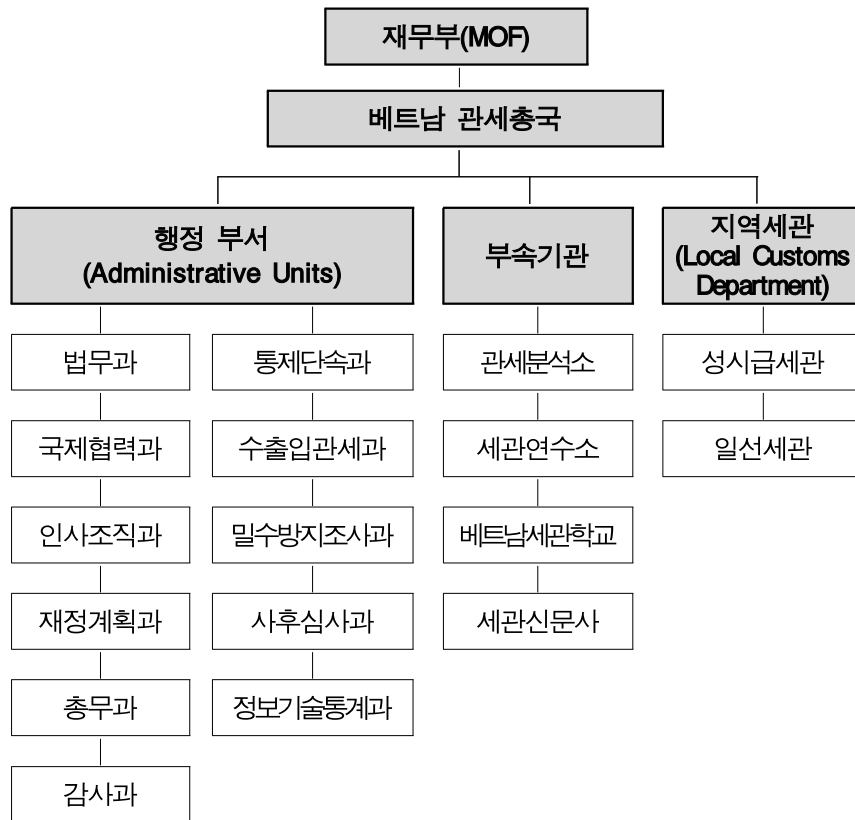
Ⅲ. 베트남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가. 통관 행정 조직

-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소비세국으로 출발, 현재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발전하였음
- 관세총국의 기능과 임무는 통관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 등임
-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 등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 관세국)이 있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 조직을 두고 있음. 이를 포함하여 통상 33개의 지방 관세조직이 있음
 -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음
-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임

[그림 III-1] 베트남 관세 행정 조직도



자료: 관세청

- 베트남에서는 지방세관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관세 법령과 중앙정부 재무부와 관세총국의 지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음
-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 하에 운용이 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처리는 한국처럼 일사분란 하지는 않음
 - 세관 직원 역시 성 세관별 자율 선발 체계이며, 세관원의 권한이 강한 편임
-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 저하, 신속한 서비스 및 전문성 개선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함

- 베트남 재무부는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한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답변하여 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이러한 통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나. 각종 수입허가 제도

1)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제도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⁸⁾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
 -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 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 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되었음
 - 재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됨
-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루어짐
 -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⁹⁾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

8) 시행세칙(Circular) No.24/2010/TT-BCT

9) 동 세칙의 부록(Appendix) 02

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함

<표 III-1> AIL 대상 주요 품목 예시

베트남 HS 코드	품 목 군
- 0301 내지 0305, 0307 - 0306 14 0000 - 0306 24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 1601 00 0000 - 1602 내지 1605	육류·어류 등의 조제품
- 1704	코코아 미함유 사탕과자
- 1806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식료품
- 1901 10 - 1902, 1904, 1905 - 1903 00 0000	곡물,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2101 내지 2104 - 2105 00 0000 - 2106 90 1000/2000/3000 - 2106 90 9100/9200/9400/9910/9990	각종의 조제식료품
- 2201 내지 2208 - 2209 00 0000	음료·알코올 및 식초

자료: Circular No. 24/2010/TT-BCT 부록 01

-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가짐

-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함
-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함

2) 라벨링(Labelling)¹⁰⁾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 정부의 검사·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정확해야 함
-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 재화의 라벨은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 내용에 추가하거나, 제조자 라벨 옆에 수입업체의 라벨을 별도 부착하도록 함
-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정보는 상품명과 제품의 성분을 비롯한 약 8가지임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업장의 상호 및 주소(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10) 관련법령은 Decree(시행령) No. 89/2006/ND-CP(2006. 8.30)

○ 제품의 원산지

3) 표준 규격

-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 규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 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그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함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제공받기도 하고,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www.tcvn.gov.vn)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Decision(결정) No. 50/2006/QD-TTg(2006.03.07)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대상은 의료장비,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바다양식 사료,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과 살충제, 비료, 동물 진료 관련 용품, 가축 사료, 산업용 폭약과 고농축 질산암모늄, 크레인·기중기·굴착기 등의 중장비, 시멘트 및 석면 지붕판 등임

4) 안전 인증서

- 안전 인증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요구됨
-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STAMEQ, 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 수입 제한 제도

1) 수입 쿼터 제도

-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 정책 방향인 자유 무역 장려에도 불구하고, 석유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음
-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되며, 대상 품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표 III-2> 2011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HS코드	상품	쿼터
0407009 04070092 04070099	계란 오리알 기타 알	38,000 Dozen
2401	미가공 담배, 담배부산물(찌꺼기)	38,000 Tons
1701	설탕	250,000 Tons
2501	소금	102,000 Tons

자료: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2) 수입 금지와 수입 허가

- 베트남으로의 수입 금지 품목은 무기, 폭발물(공업용 제외), 마약류, 담배류, 반동 문화품,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가정용품, 신발, 의류 등), 중고 자전거와 2,3륜 오토바이, 중고 의료기계와 앰블런스, 베트남 내 유통·배포가 금지된 서적,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등임
 - 그 외에도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함

- 베트남에서는 중고 기계가 수입 금지 품목이나, 중고 기계라 할지라도 투자공장 설비용 기계와 일반 무역 목적(판매용) 기계의 경우가 서로 다름
 - 판매용 중고 기계의 경우에는 신품의 80%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함
 - 중고 투자 설비의 경우 생산년식이 5년을 넘으면 안됨
 - 투자 목적으로 수입 되는 중고 기계는 신품 품질의 80% 이상 기준은 없음

- 베트남은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 또한 중고 기계, 장비, 폐기 대상 운반구는 수입 금지 대상이며,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등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 오염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 물질, 유효기간 경과 또는 위생·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됨
 - 폐품에 관하여서는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이 수입 금지대상이며, 재활용 품 수입에 있어서도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을 포함하면 안되고,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등 환경 보호 규정이 엄격함

- 베트남에서는 수입 허가 품목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음
 -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함
 - 수입(무역)허가 대상 품목은 담배 및 궤련, 신문, 잡지, 원유, 영상물 등임

- 요컨대, 베트남에서의 수출입규제방식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허가 품목(산업무역부 허가를 의미), 주무부처 관리품목(요건확인) 등 3부류로 나뉨
 - 그 외 사치성 소비재로 분류되는 9인승이하 자동차, 화장품·주류·이동전화 등은 하이퐁, 다낭, 호치민 관세국 및 그 세관지국만을 통관세관으로 지정하여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라.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국세¹¹⁾

1) 수입 관세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율은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갖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현재 우대관세율의 150% 정도이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FTA)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임
 - 한국 : AKFTA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400개 내외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있음 유의)
 - 아세안 회원국 : AFTA/CEPT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2006년 말까지 베트남 관세율 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요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임
 - 중국 : ACFTA 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현재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음. 일부 품목의 경우 ACFTA의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기타 : 미국과 유럽산 섬유 및 의류, 라오스산 제품 일부에 적용됨

11) 외교통상부, 2010

- 베트남은 2007년 150번째로 WTO 가입국 지위를 얻으면서, 가입 이전에 관세 협상을 요하는 26개국과 양자 협상을 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관세율의 22%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 등의 부문에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17.4%였던 기존 수입 관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2009년 기준 단순 평균 관세율은 약 9.3%임
- 그 중 농산물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3.5%에서 21%로 WTO가입 전과 비교 2.5%하락하였으며, 공산품은 16.6%에서 12.6%로 약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3> WTO 가입 전 후 베트남 평균 수입관세율

(단위: %)

분야	베트남 평균 수입 관세율	
	현행	WTO 가입 후
농산물	23.5	21.0
공산품	16.6	12.6

자료: 2010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외교통상부

- 다만, 카페트(100%), 오토바이(75%), 버스(70%), 화물차(70%), 2,500cc 이상 승용차(70%) 등의 품목에서는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하여도 25%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음
-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 함
-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¹²⁾ 협정국이므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양허된 품

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보다 낮은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특별소비세(SCT, Special Consumption Tax)¹³⁾

□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 업체 또는 생산 업체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그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됨

<표 III-4>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예시

제품/서비스	세율(%)
담배(꺾련/엽꺾련)	65
주류, 와인	25~45
맥주	45
24인승 이하 자동차	10~60
실린더 용량 125cm ³ 초과인 모터사이클	20
휘발유	10
에어컨	10
게임용 카드	40
부적(votive paper)	70

자료: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1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담배류, 알코올, 주류, 24인승 이하 자동차, 화물차, 가솔린·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에어컨, 게임용 카드, 부적 등 잡제품이며, 골

12)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간 실효성있는 무역체제 확립을 모색한 개도국만의 무역협정이며, 회원국간 교역 시 기본세율 보다 낮은 양허세율 적용 가능함. 현재 협정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46개국임(아시아 13개국, 아메리카 14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동 3개국, 유럽2개국)

13) 베트남어의 영문 번역에 따라 SST(Special Sales Tax) 또는 Excise Tax라고 칭하기도 함

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사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의 서비스 분야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¹⁴⁾

3)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으로 0%와 5%, 그리고 10%의 3종류가 존재함
- 0% 적용대상: 수출품에 적용, 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 불가 선박 및 항공기, 토지사용권 양도, 일부 교육서비스 등
- 5% 적용대상: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가축 사료, 농산물, 서비스, 기본 화학품, 기계제어, 정제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 및 적하 관련 활동 등 생필품 및 관련 서비스
- 10% 적용대상: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 제품, 가공식품, 관광, 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 등 5%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4) 수출세

- 베트남은 일부 전략 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¹⁵⁾하는데, 이는 자국 내 자원 보존 및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것임
- 수출세는 FOB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14) 관련 법령은 Law No. 27/2008/QH12이며, 그 내용은 부록 VI 영문 번역본 참고

15) 수출세 부과 규정은 No. 184/2010/TT-BTC(2009.11.15)

- 쌀, 목재, 고철, 석탄 등 1차 상품과 보석, 금 등 79개 특정 품목의 수출 시 최소 2%에서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함
- 원유(10%), 석재(17%), 석탄(15%), 목재(5~10%), Steel Scrap(2%), Zinc 및 Lead 등의 자원(최고 세율인 45%) 등에 대하여 부과됨

마. 관세 면세 제도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기계류인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면세 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of Vietnam)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신청해야 함
- 수입 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 공식 서한, 수입 재화의 목록(재화명, 수량, 기술 사양성 및 금액), 투자 허가서 또는 사업 허가서의 사본,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등임
 - 성의 투자기획국(DPI)에 수입 계획 신청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승인하며, 투자 기업은 당해 승인을 받은 후부터 승인받은 기계류 및 장비를 수입할 수 있음
- 투자기획국(DPI)에서 승인 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중고 기계류에 대하여도 면세 규정이 적용됨
 - 중고 설비 기계류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비롯하여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 DPI 수입 계획 승인서, 수령 서류(Receipt docs form) 1과 2,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 2부, 소개서(Introduction letter)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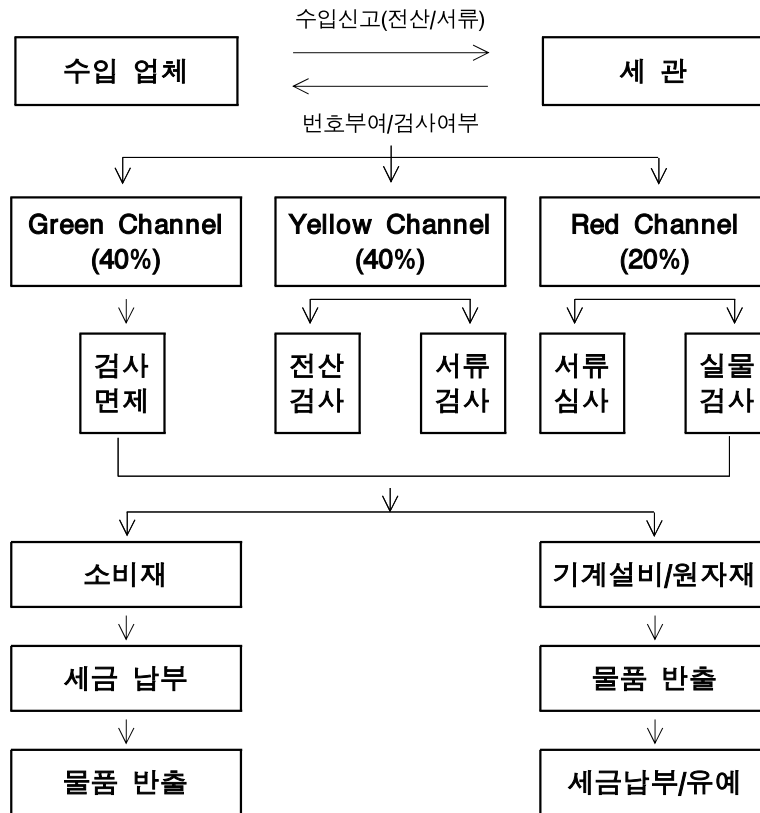
- 만일 수입되는 설비 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여 줌
-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 이외에 일반적인 면세 규정도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수출용 일시 수입 물품, 재수입용 일시 수출 물품,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 부과가 면제됨

2. 베트남의 통관 절차

가. 수입 통관 절차

- 베트남 통관 절차는 ① 수입 신고 → ② 세관의 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관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됨
-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 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함
-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함
-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됨

[그림 III-2]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베트남 통관환경 보고 (주 베트남 관세관)

- 신고 시 수입 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수입 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계약서(Sales Contract)
 - 필수 서류에 더하여, 해당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한-ASEAN FTA협정세율 적용 희망 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 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I/L)

- 쿼터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 면세 제품인 경우 면세 신청서
- 수입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허가 등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허가서와 각종 증명서 등

□ 통상적으로 물품 반출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수입 목적 등에 따라 면세 또는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투자 목적 공장설비용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출 재화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물품 반출 전 세금 납부 대상은 재무부 지정 소비재,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납부 유예 기간 중 법 위반 업체, 법 위반으로 1년 내 국(局) 1회, 지국(支局) 2회 이상 처벌 업체임

- 물품 반출 후 세금 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닌 물품으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은행의 납세 보증이 있는 경우 등임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따로 정하는 물품¹⁶⁾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받아야 함

- 그 중 특히 육류나 수산물, 곡류와 두류,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및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 시에 수입 허가서와 검역 증명서를 모두 함께 제출하여야 함

16) 자동수입허가 대상 품목은 시행세칙(Circular) No.17/2008/TT-BCT와 No.24/2010/TT-BCT에 HS코드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특정 도자 및 유리제품, 철강제품, 일부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음료 등임

나. 수입 화물 검사 제도

- 세관 검사는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 물품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를 포함하며,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가지로 구분 진행됨

<표 III-5> Channel 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 신고 시)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전산 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Paper-Yellow Channel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Red Channel		종이 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 저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함(Green Channel)
- 세관 물품 검사 면제(Yellow Channel)
 - 수입된 재화가 면제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됨
 -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함
- 고위험 물품에 대하여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뉨(Red Channel)
 -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임

-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으나,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또는 관련 자료나 세관원의 수색 또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통관 후 5년 이내에 세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함
 -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됨

다. 수출 통관 절차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적 일정 확인 → ② 서류 준비 → ③ e-customs 신청, 세관의 네트워크 통해 신청번호 확인 → ④ 면장 신청 및 승인 → ⑤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⑥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로 이송 → ⑦ 선적 전 검사 → ⑧ 면장과 Booking Note를 세관에 신고 → ⑨ 통관 종료 후 선적 → ⑩ 선적 후 세관의 최종 승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수출 신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서(필요 시)이며,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 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세 납부 대상 품목은 수출세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라. 관세 납부 유예 및 환급¹⁷⁾ 제도

-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해, 세금 연체 또는 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현지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수입 시, 신고일로부터 275일 동안 관세 징수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음
 - 이러한 징수 유예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당해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함
 - 실제 수출 물량에 소진된 원부자재의 비율 만큼 관세를 되돌려 받게 되며, 수입 시에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하고, 275일 이내에 신고할 시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관세 환급 시 구비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 정산서, 대금 결제 확인 서류임
 -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 환급 신청 제척 기간은 당초 수출목적 신고 된 경우는 무제한이며, 당초 내수 목적으로 신고 된 경우는 수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임

마. 보세제도

- 한국과 같은 보세공장과 보세운송제도는 없으며, 한국과 유사한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임가공 등과 같은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그렇지만, 전국의 276개의 공업구(Khu Cong Nghiep, Industrial Zone), 76개의 수출가공구(Khu Che Xuat, Export Processing Zone)에서는 관세유예제도와 구역외 임가공이 세관신고하에 허용되고 있어 보세공장제도를 대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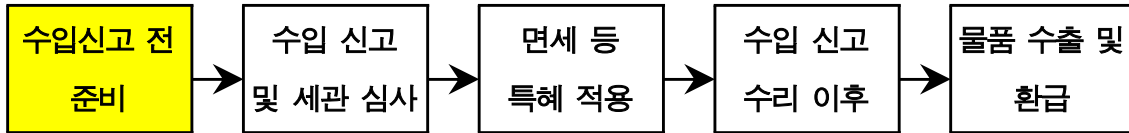
17) 관세 환급의 근거법령은 45/2005/QH11(2005. 6.14), 154/2005/ND-CP(2005.12.15), 194/2010/TT-BTC(2010.12. 6)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표 IV-1> 베트남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 대상 품목은 수입 신고 이전, 물품의 하역 전, 산업무역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함 ○ 일부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베트남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함 ○ FTA세율 적용 희망 시, 한국에서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함
2. 수입 신고 및 세관심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다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관세총국과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수입 신고에 전문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 전산시스템으로 수입 신고 후 추가적으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세관통관시스템 상으로 통관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세관 방문 등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가능성 있음 ○ 기계류 HS 분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자세하지 않아 품목분류 어려움
3. 면세 등 특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가 적용되는 '투자 목적의 고정 자산인 공장 설비' 기준 판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면세 신청에 있어 정형화된 면세 신청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도 관세 납부의 대상임
4. 수입 신고 수리 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이후 물품은 관세법령 이외 현지의 내국 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 특정 처분이 추후 일방적으로 변경·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5. 수출 및 환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여 수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정해진 기간 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 운송장(Air 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계약서,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함
 - 한-ASEAN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해야하며, 쿼터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면세 제품인 경우 면세 신청서,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I/L)과 기타 경우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자동수입허가(AIL)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미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육류나 수산물, 곡류와 두류,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함께 검역을 거친 후, 당해 수입 허가서와 검역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에 세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나. 애로 사례

- 아직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원본 종이 서류 요구 등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의 발생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수출입 신고 관련 첨부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인력 필요 및 비용이 발생함
 -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일부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생산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함¹⁸⁾
- 경우에 따라 베트남어로 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선적 서류를 베트남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FTA 체결 등에 의한 특혜 관세(낮은 세율 또는 무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재상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아세안 국가 간 또는 한국,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일치 사항 등이 있다면 이로 인해 특혜 관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업무상 유의점

- 통관 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고 평판이 좋은 통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음
- 화물의 실제 사항과 선적 서류 등 구비 서류 상호 간 차이점 없이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 특히 물품 가격 작성에 있어 더 낮은 가격으로 상업 송장을 작성하여 과세 가격을 낮추려는 행위(언더밸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상업 송장 금액을 작성하여야 함

18)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 주요국 진출 국내기업 애로 현황 보고서'(2011. 2.10)

- 원본이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또한 통관 예정 세관에서 주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서류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류 구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사전에 절차와 서류 구비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해 수입 신고 기한(입항 후 15일)을 넘기면 수입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수입 신고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한-ASEAN FTA의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ORM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한-ASEAN FTA의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원산지 증명 신청 및 증명 관련 각종 정보 취득이 가능함

-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는 HS 코드와 원산지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HS 코드와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 신청해야함
 - 관세총국 홈페이지(www.customs.gov.vn/English) → 우측 상단 'Online services' 아래 'Tariff Search'클릭)를 통해 베트남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서 HS 코드 및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HS 코드 상위 6단위가 동일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HS 코드 10자리 중 앞의 6자리로 검색 하면 됨

- 베트남에 물품을 수출하기 전 사전에 관세법 및 수출입 세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과 하위 법령 등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음
 - 베트남 관세총국 영문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총국 홈페이지(www.customs.gov.vn/English) 접속 후 우측 상단 'Online services' 내 'Legal Document'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DOCUMENT FILTER에서 'By Document Type'으로 필요한 법령을 선택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Law는 법률, Ordinance는 법령, Decree는 시행령, decision는 수상(총리)령이며, Circular는 시행세칙임
 - 동나이세관 홈페이지에서도 영문으로 번역된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관 홈페이지(www.dncustoms.gov.vn/web_english/law.htm) 좌측 메뉴 중 'Law documents'는 각종 관련 법령, 'Governmental documents'에는 Decree 와 Decision을, 'Ministerial documents'에서는 Circular의 확인이 가능함

- 'Circular 24'라고 불리는 AIL 관련 법령의 영문 번역본은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운영하는 ASEM Connec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 또는 세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령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영문 지원이 되지 않는 법령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번역본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다양한 베트남 통상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유익함
 - 현행 법령인 Circular No.24/2010/TT-BCT는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www.eurochamvn.org) → 상단 메뉴 중 'Sector committees' → 맨 아래 'Wine & Spirits' 클릭 후 사진 하단의 내용 중 'Circular 24 E'를 클릭하여 열리는 파일임
 - 이전 법령인 Circular No. 17/2008/TT-BCT의 내용을 원하는 경우 ASEM Connect사이트(<http://asemconnectvietnam.gov.vn>) → 상단 푸른 색 메뉴 중 'Business Consultancy' → 'Vietnam Law' → 좌측의 메뉴 중 'Search' 선택 → Words in the title란에 '17/2008'을 입력하고 Search버튼을 눌러 결과물 선택함

- 본 사이트에서도 현행 법령인 Circular No.24/2010/TT-BCT 역시 동일하게 검색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부록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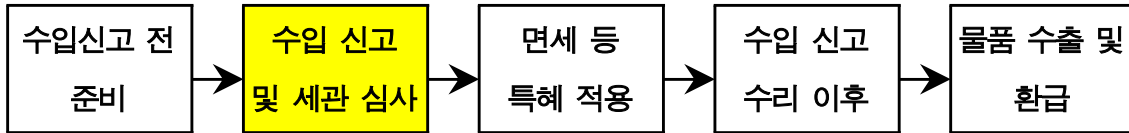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세금을 내야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 현재(201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없음

□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http://antidumping.kita.net>)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이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현황' → '주요국제소 및 규제 내역' → '아시아'에서 베트남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규제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 단, 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웹페이지 무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열람 가능함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베트남의 세관도 한국처럼 중앙통제 하에 운용되고 있으나, 업무의 진행은 각 성(省) 세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각 세관마다 적용하는 통관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입 신고는 선박의 입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산 신고와 서류 신고가 모두 가능함
 - 전산상으로 수입 신고를 하더라도, 종이 서류 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수입 신고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중고 기계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중고 기계에 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중고 기계라 할지라도 투자공장 설비용 기계와 일반 무역 목적(판매용) 기계의 경우가 서로 다름
 - 판매용 중고 기계의 경우에는 신품의 80%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하며, 중고 투자 설비의 경우 생산년식은 5년을 넘으면 안됨(투자 목적으로 수입 되는 중고 기계는 80% 이상이라는 품질 기준은 없음)
- 베트남은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에 대하여

도 관세를 부과하며,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되나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입 쿼터 대상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애로 사례

- 지역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관별로 관세율과 납부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동일한 HS 코드의 수입 품목에 대하여 세관별 각기 다른 관세율 적용 등 상이한 업무 행정 수속이 행해진 사례가 있음

-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HS 품목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문화적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HS 코드를 다르게 판정될 수도 있음

- 품목분류를 위해 베트남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총국에 HS 품목분류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수개월 간 지연된 사례가 있음

- 베트남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HS 품목분류 체계로 인한 애로가 있으며, 베트남 HS 코드상에 특계(명시)되지 않은 기계류가 많아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음
 - HS 품목분류가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비특계 물품을 주로 '기타 품목(others)'으로 분류하게 되어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음
 - 특히 베트남으로 기계류를 수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HS 코드에 비해 베트남 HS 코드에 기계류가 자세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HS 분류에 애로가 있음
 - 우리기업들은 시설재나 원부자재를 수입 시 일반적으로 HS 품목분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 애로가 있음¹⁹⁾

-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 대상 품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또는 Customs Agent 제도가 존재하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 화주가 직접 또는 물류 업체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화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원거리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통관진행 상황의 파악이 힘든 경우가 있으며, 세관 방문과 그로 인한 금전·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전산화 시스템은 전산 신고 후 추가로 서류 제출도 필요로 함 - 또한 전산 사용자가 많을 경우 세관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전산 신고 후 정정이 불가능하여 신고를 취소한 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데에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세금 납부 사실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고도 물품 반출이 곤란한 사례가 있음

- 베트남에는 중고 기계에 관한 수입 금지 규정이 있는데, 기계가 신품의 품질 80% 이상이어야만 판매용으로 수입이 가능함
 - 본래 중고 기계류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 기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실제로는 관할 검사 세관원이 80% 기준에 대해 판단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80%' 기준 판단이 쉽지 않음

19) 대한상공회의소, (20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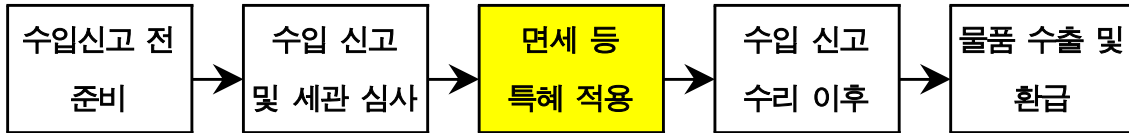
-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베트남 세관이 타 성(省)의 기관 또는 기타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다소 부족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매번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복잡한 업무 해결에 있어 통관을 위한 일반적 비용 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베트남의 조직 문화 상 작업의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늦은 편이므로 행정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 업무 책임을 위한 검토 시간과 결재 절차가 다소 많고 복잡하여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다. 업무상 유의점

- 물품이 베트남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 수입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품목 분류 및 세율 적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관 예정 세관에 미리 제품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HS 코드를 부여받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HS 코드는 베트남 관세총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English> → Tariff Search' 메뉴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HS 코드는 상위 6단위는 동일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HS 코드 10자리 중 앞의 6자리를 입력하여 검색 하면 됨
 - 베트남으로의 FTA 적용 세율은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 세율/원산지확인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상대국의 관세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율 FAX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중고 기계 등은 베트남에서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고 기계의 수입 기준(신품의 80% 이상)과 통관을 진행할 물품의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 책자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므로, 홍보용 판촉물, 팜플렛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 의무를 염두해 두어야 함
- 통관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가 수입자의 과실로 인한 기본적인 사항의 불일치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예 : 통관 서류 간 불일치, AK FTA 원산지증명서 미구비, 원산지증명서 상의 항목 오기재, 물품과 수입신고내용 간의 불일치 등) 작은 사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지의 전문가 및 유경험자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으며, 통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들과 실제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논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3. 면세의 적용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기계류인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정해진 면세신청서 양식이 없어 신청 시 어려움이 있음
 - 면세 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사전에 투자기획부(MPI)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수입 계획을 각 성(省)의 투자기획국(DPI)에 신청해야 함
 - 투자기획국(DPI)의 승인이 있어야 기계류 및 장비를 면세 수입할 수 있음
- 중고 기계류라도 사전에 투자기획국(DPI)에서 승인 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 용도라면 관세 면세 규정이 적용됨
- 베트남의 관세법령 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전시회 등의 참가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되며, 이 경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 함

나. 애로 사례

- 공장기자재 화물에 대한 면세 규정에 대하여 그 범위를 서로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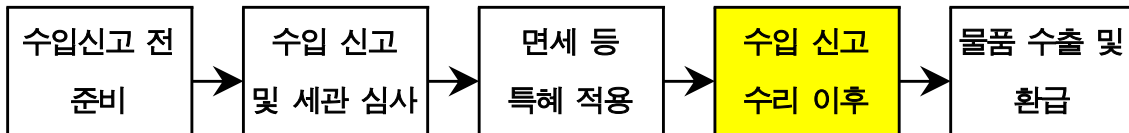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상 '고정 자산'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 그러나 실제 화물의 수입 시 어디까지 고정자산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하여 수입자와 세관 측의 이견이 빈번히 발생함²⁰⁾
- 투자업체의 경우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 수입을 가정하지만, 실제 화물 수입 시 관할 세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인 기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만들기 위한 부품, 연결품(배관 및 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쟁의 소지가 있음
- 통일화된 면세신청서 양식이 없어 면세신청 시 어려움을 겪음
 - 투자기업의 공장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MASTER LIST(면세신청서)를 준비하여 사전에 관할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 투자 업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함
- 베트남은 샘플과 광고·홍보 물품(책자, 카탈로그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촉물 등을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등의 통관 시에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 업무상 유의점

- 투자 기업으로서 공장 설비 이전을 위해 고정 자산의 베트남 수입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면세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통관 예정 세관에 미리 면세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및 물품 판매를 위한 상품 목록·가격표 등의 수입 시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샘플 및 광고·홍보용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에 유의해야 함

20) 대한상공회의소, (2011. 2)

4. 수입 신고 수리 이후 단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 물품은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지의 법규에 따라 관리 받게 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상대 국가의 규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방적으로 당해 처분을 철회·취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 활동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기도 함

나. 애로 사례

- A사는 버스를 수입함에 있어 수송용 버스 용도로 면세 확인을 받아 수입을 진행했으나, 베트남 국내법 상의 차량 등록 문제로 통관 후 차량 운행이 불가하였음
- B사는 공장 설비 자재 중 대형화물(보일러 등)을 수입하게 되었으나 이는 중량과 높이, 넓이 등에서 베트남의 일반 도로운송 규정 조건을 초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장 부근까지 내국 해상 운송해야 했음
- 수입 신고 수리 시에 세관으로부터 분할 납부(주로 세금이 거액인 경우, 약속한 기간 동안 나누어 세금을 납부)를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당해 분할 납부 건에 대하여, 당해 분할 납부로 인한 추가 이자까지 추정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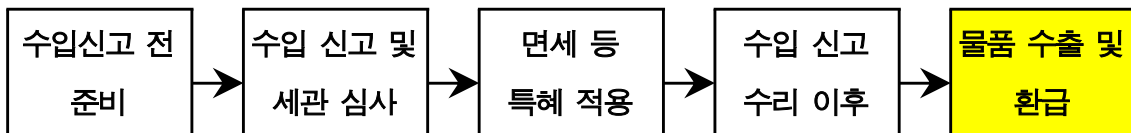
다. 업무상 유의점

- 현지에서 통관 진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수입 절차 뿐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 적용될 기타 국내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하여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시간적·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대형화물의 경우 상대국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에 중량 화물 신고 및 사전 운송 허가를 취득해 두도록 함

- 수입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행정 처분 등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묻고 답변을 얻도록 함

5. 수출 및 환급 단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베트남에서는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 환급 제도와 관세 징수 유예 제도를 운영 중임
 - 관세 환급 시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 관세, 수입 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하여야 함
 - 환급 신청의 제척기간은 당초 수출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무제한이며, 당초 내수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임

-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 신고서, 당해 수출 제품에 공해진 원재료 등의 수입 신고서, 소요량 정산서, 대금 결제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베트남의 관세 환급은 환급 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일 지연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이자 보상 등의 규정은 없음
- 베트남 수출입세법(제11조 2항)에 의해, 성실 납세 현지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수입 시 신고일로부터 275일 동안 관세 징수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음
 - 이러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당해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함
 - 원자재 수입 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 275일 이내에 신고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나. 애로 사례

- 특송업체를 통한 약식 수출면장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 거액을 추정당한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지방세무서는 약식 수출면장(뒷면에 선적확인 도장을 찍는 난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 베트남 세관이 발급한 약식 면장에 의해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음
- 임가공 수출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임
- 베트남의 관세 환급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다. 업무상 유의점

-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의 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에는 환급 및 관세 유예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 관세 유예 규정에서 275일 이내에 수입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수입 관세와 더불어 납세 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함
 -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관세를 내야함
 - 275일 이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환급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하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 관세 환급은 관세국에서 관할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국의 업무임에 유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국에 따로 신청하도록 함

부록 I. 비즈니스 팁

- 베트남에서는 각종 법규가 수시로 변하며, 매매 당사자 간 계약도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베트남은 각종 법규가 수시로 변하므로 현행 법령 및 시행령 등을 미리 꼼꼼히 살피도록 하며, 또한 구두 계약은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구두 계약 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미팅은 매우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미팅 전 파트너와 접촉하여 참석자 명단 및 직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아래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면담 장소에서는 간단한 악수 및 인사말 후에 초청자측의 환영 인사 후 방문자측이 답사하는 것이 통상적임

- 베트남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Mr.(Mrs) + 이름' 대신에 '직함 + full name'(예: Chairman Pham Van Khai)의 형식으로 불러야 함
 - Deputy, Vice, Assistant 등이 포함된 직함에 대하여는 상위자가 같이 없다면 이를 생략하여 높여 불러주는 것이 적절함(예: Deputy Director Khai 대신 Director Khai)

- 베트남의 이름 표기는 한국과 같이 성과 이름 삼음절로 '성 - 중간이름 - 끝이름'으로 구성되나, 우리와 달리 끝 이름만으로 부름
 - 베트남인의 이름 중 중간이름의 경우, Văn(반)은 남자에게, Thi(티)는 여자에게 보통 사용되기 때문에 가운데 이름을 보면 성별을 파악할 수 있음

- 비즈니스 관계는 개인생활을 공유할 수록 더욱 긴밀해질 수 있으며, 비즈니스 이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적 관계가 사업 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지위 선임자에 대해 체면을 세워주고 적절한 존경을 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우대적 표시는 정부기관, 국영기업 접촉 시 더욱 중요함
 - 첫 면담 시 선임자에게는 더 좋은 선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명함은 선임자 순으로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명함을 주거나 받을 때 양손으로 잡고 손을 뺀어 주는 것이 예의임
 - 받은 명함은 주의 깊게 읽는 표정을 통해 존경을 표시하도록 하며, 주머니에 쑤셔 넣는 행위는 금물이므로 주의해야 함(대규모 대표단의 경우 우선 선임자만 교환하고, 여타 참석자들은 면담 후에 명함을 교환함)

- 오찬 또는 만찬 시에는 초청자 측에서 대접하는 경우 방문자는 감사의 표시로 리턴 초대하는 것이 예의이며, 초청자 측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상호 건배를 제안함
 - 초청자측이 건배를 제의할 때는 최고 선임자나 연장자를 보고 일어나서 양손으로 술잔을 들며 간단한 덕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헤어질 때는 모든 베트남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감사를 표시하도록 함

- 베트남은 여성 지위 존중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성에 대한 예절이 매우 중요시 됨
 - 베트남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회의 또는 면담 시에 여성에 대한 예절이 매우 중시됨

- 약속 시간에 약 10~30분 정도 늦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다소 늦게 나오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함
 - 최근 베트남은 오토바이 수요 증가와 곳곳의 신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 편임

- 특히 출·퇴근 시간의 도로는 오토바이로 혼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동할 경우,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인들은 수입 유명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도 좋음

□ 베트남인과 협상을 원한다면 바로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가족의 근황, 날씨, 음식, 베트남의 발전상 등에 대한 덕담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며 오랜 세월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외침을 물리친 역사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 또한 대단함. 따라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칭찬하는 것이 좋으며, 수입이나 생활비 문제 등 금전적 이야기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이념, 정치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함.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인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잘 하지 않는 관습이 있으며 특히 체제 비판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종교의 포교를 하지 않도록 함

○ 지방정부 소속 종교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활동(종교집회 또는 노상에서의 찬송가 합창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발각 시 추방 등 강경 제재조치를 받게 됨

□ 숫자 금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함

○ 베트남은 숫자 9를 신성한 수로 여기는 대신 13을 액운의 상징으로 여기며,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협의 뜻과 비슷하여 5를 기피하는 특징이 있음

- 음력으로 매월 5, 18, 23일은 불길하게 여겨 행사나 계약 등을 잘 하지 않으며, 음력 5월에는 결혼식도 잘 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선물로 칼 또는 가위 같은 날카로운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수건도 이별을 연상하므로 좋지 않음. 또한 검정색은 불행과 연관하므로 선물로 적합하지 않음

- 베트남 사람의 어깨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남의 어깨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특히 새해 첫날)되며 만약 한쪽 어깨를 때렸다면 반대편 어깨도 때려야함

-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절대 하지 말 것
 - 미신에 따라 임신한 여성은 사진 촬영을 불길한 행동으로 여기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는 사진 찍는 것을 권하지 않도록 함

- 동류 의식 자극으로 친밀한 분위기 유도하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화제로 삼으면 좋을 것임.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나 음력 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간단한 인사말이나 감사 표현 등 자주 쓰이는 베트남어 정도는 준비하여 두면 좋음
 - 간단한 인사말(신짜오: 안녕하세요, 캄언: 감사합니다, 콤꼬치: 천만에요, 콤사우: 괜찮습니다, 헨갑라이: 또 만나요 등)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여 상담 시 적당한 기회에 사용한다면 상담의 효과가 증대 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깨끗하지 않거나 구겨진 돈은 위폐 구분이 쉽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점에서 잘 받지 않고 환전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지폐를 구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만일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많이 구겨진 지폐를 받게 된다면 구겨지

지 않은 다른 지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여야 지폐를 다른 상점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원래부터 베트남에 팁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차츰 팁을 주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음. 호텔 및 고급 식당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손님으로부터 약간의 팁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호텔 포터에게는 10,000동~20,000동, 침실 청소부는 10,000동~20,000동, 레스토랑에서는 음식 값의 5% 이내가 팁으로 적절함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대사관	
주소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3831 5110-6
팩스번호	(84-4) 3831 5117
영사부	
주소	3rd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3771 0404
팩스번호	(84-4) 3831 6834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페이지	http://vnm-hochiminh.mofat.go.kr/
이메일	hcm02@mofat.go.kr
주소	106 Nguyen D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전화번호	(84-8) 3824 8531~4
팩스번호	(84-8) 3822 5750
■ KOTRA 하노이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or.kr - 해외무역관 - 하노이 무역관

주소	KOTRA Hanoi, c/o Korean Embassy Suite, 13 Floor, Office Block of the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3946 0511~8
팩스번호	(84-4) 3946 0519/20
이메일	kotrahanoi@kotra-hanoi.org.vn

■ KOTRA 호치민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or.kr - 해외무역관 - 호치민 무역관
주소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전화번호	(84-8) 3822 3944/3950
팩스번호	(84-8) 3822 3941
이메일	kotrasgn@hanmail.net

■ KORCHAM

웹페이지	http://www.kocham.kr
주소	47 Nguyen Cu Trinh, Q.1, Ho Chi Minh City
전화번호	(84-8) 3837-9154, 3920-5853
팩스번호	(84-8) 3837-9155
이메일	kocham@kocham.kr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웹페이지	www.mof.gov.vn(영문지원)
주소	No. 28 Tran Hung Dao Street - Hoan Kiem District - Ha Noi
전화번호	(84-4) 2220 2828
팩스번호	(84-4) 2220 8091
이메일	support@mof.gov.vn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웹페이지	www.moit.gov.vn(영문지원)
주소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Viet Nam
전화번호	(84-4) 2220 2222
팩스번호	(84-4) 2220 2525
이메일	bbt@moit.gov.vn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웹페이지	www.mpi.gov.vn(영문지원)
주소	No. 6B, Hoang Dieu, Ba Dinh, Hanoi
전화번호	(84-80) 44589, (84-4) 38455298(Ministry Office), (84-80) 43485
팩스번호	(84-80) 44802, (84-4) 38234453(Ministry Office)
이메일	banbientap@mpi.gov.vn

■ 베트남 관세총국(Vietnam Customs)	
웹페이지	www.customs.gov.vn(영문지원)
주소	No 162 - Nguyen Van Cu street, Long Bien district, Hanoi Capital, Vietnam
전화번호	(84-4) 8727033
팩스번호	(84-4) 8725949
이메일	webmaster@customs.gov.vn

■ 베트남 통계청(Statistics Documentation Centre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웹페이지	www.gso.gov.vn(영문지원)
주소	6B Hoang Dieu - Ba Dinh - Ha Noi
전화번호	(84-4) 3733 2997, (84-4) 3846 4921
이메일	banbientap@gso.gov.vn

■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STAMEQ,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웹페이지	www.tcvn.gov.vn(영문지원)
주소	No 8 Hoang Quoc Viet Str., Cau Giay Dist., Ha Noi, Vietnam
전화번호	(84-4) 3756 3900
팩스번호	(84-4) 3836 1556
이메일	tttt@tcvn.gov.vn

부록 Ⅲ. 베트남 관세청법²¹⁾

(제42/2005/QH11호, 2005. 6. 14)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국제 협력 및 교류의 발전 및 국가의 주권, 국가안보 및 개인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에 의거;
이 법은 관세에 관해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관세에 관한 정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를 통한 수출, 수입, 출경, 입경 활동에 관한 원활한 관세환경을 조성한다.

제2조. 조정 범위

이 법은 베트남 관세영역 안의 국내외 법인, 개인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출경, 입경 물품 및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관한 국가관리 세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규정한다.

21) 외교통상부 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2011.11)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경, 입경, 국경통과를 실행하는 법인 및 개인
2. 관세기관, 관세공무원
3. 관세관련 국가관리에 협조하는 기타 국가기관

제4조. 용어 해설

이 법에서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물품'은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 출경, 입경 하는 자의 수화물, 외환, 베트남통화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품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거나 세관활동 구역에 보관되는 귀금속, 유물, 문화재, 우편소포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2.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은 법률규정에 따른 코드와 명칭이 있는 모든 동산으로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거나 세관활동 구역에 보관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3. '출경, 입경 하는 자의 수화물'은 출경, 입경 하는 자의 생활 또는 이동 목적에 필요한 물품으로 출경, 입경 하는 자의 휴대수화물, 이동 전후의 위탁수화물을 포함한다.
4. '운송수단'은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하는 육로, 철도, 항공, 해운, 내륙수운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5. '운송수단 용품'은 운송수단의 사용자산으로 운송수단 운영을 위한 원료, 연료 운송수단 상의 승객, 직원의 생활에 필요한 양식, 식품, 기타 용품을 포함한다.
6.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인과 관세공무원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7. '세관신고인'은 화주, 운송수단주, 또는 화주, 운송수단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다.
8. '세관검사'는 관세기관이 실시하는 세관신고서, 관련 증명서류에 대한 검사 및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다.
9. '세관감시'는 세관관리 대상에 속하는 물품, 운송수단의 원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기관이 적용하는 업무방법이다.
10. '세관통제'는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및 기타 관세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조사 또는 기타 업무방법이다.
11. '통관'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기관의 수출, 수입 결정, 운송수단에 대한 출경, 입경 결정을 칭한다.
12. '세액징수유예창고'는 통관을 마치고 관세미납상태의 수출, 수입 물품을 보관하는 화주의 창고이다.
13. '보세창고'는 다음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 a)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출을 기다리는 물품
 - b) 외국에서 반입되어 수출을 기다리는 물품,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

14. '국경통과'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이 일국에서 베트남영토를 통해 타 일국으로 지나가거나 귀환하는 것이다.
15. '이동재산(이사화물)'은 베트남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다.
16. '환적'은 입경 운송수단 적재 물품을 수출을 위한 수출 운송수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수입 운송수단에서 국경관문구역에 하역 후 수출 운송수단으로 적재하는 것이다.
17. '국경관문 이전'은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물품, 운송수단이 한 국경관문에서 타 국경관문으로 이전하는 것; 한 국경관문에서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로 이전되는 것 또는 그 반대 상황; 한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에서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로 이전되는 것을 칭한다.
18. 관세영역은 관세청법이 적용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경제특구, 대륙붕을 포함한다.

제5조. 관세관련 국제조약, 관습, 통례의 적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의 규정, 기타 법률문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명기된 규정이 없는 경우,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국제관습, 통례를 따른다.

제5a조. 세관의 국제협력 활동

베트남 세관은 법률에 정한 기능과 규정에 따라 분장된 권한내에서 다음의 책임이 있다.

1. 세계관세기구 내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권리, 의무, 이익을 보호한다.
2. 외국세관과 양자 국제협약을 협상, 체결하고 시행한다.
3. 각국 관세기관, 관련 국제기구와 업무정보를 교류하고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제6조. 세관활동지역

‘세관활동지역’은 베트남의 주권에 속한 영토 및 해상 지역의 육로, 국제철도역, 국제해상항, 국제수상항, 국제선전용공항,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수출가공공단,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세관우대구역, 국제우체국, 수출, 수입 물품 검사장소 및 통관후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기업의 근거지와 기타 법률규정에 따른 세관활동구역을 포함한다.

세관활동지역에서 관세기관은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세관활동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세관역량 구축

베트남 세관은 청렴, 강직하고, 전문적이며,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고 업무를 시행

하는 효율적이고 ,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역량을 건설한다.

제8조. 세관관리의 현대화

1. 국가는 현대적인 세관관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선진세관기술과 방식의 개발을 투자, 권고한다. 수출입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개인의 전자무역, 전자통관의 시행을 권고한다.
2. 정부는 전자자료교환 기술표준체계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증명서의 법률적 효력 전자통관 수속시행 과정의 각급 관세기관, 유관기관, 수출입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이 조 1항에 규정된 권고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9조. 관세법률의 시행협력

1. 관세기관은 국가기관, 유관기관, 인민무장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2. 국가기관, 유관기관, 인민무장기관은 본연의 임무와 권한내에서 관세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협력적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관세법률 시행의 감시

1. 각급 인민의회는 본연의 기능, 임무, 권한내에서 관세법률 시행을 감시한다.
2.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와 각 인민전선 구성단체는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법률 시행을 감시한다.

3. 관세기관과 관세공무원은 임무, 권한의 시행과정에 인민을 위해 인민의 감시 하에 법률을 준수한다.

제2장 세관의 임무 및 조직

제11조. 세관의 임무

베트남 세관은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업무;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행위 예방방지 업무;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관련 법률시행업무; 수출, 수입 물품 통계업무; 수출, 수입, 국경통과 활동과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정책에 관한 관세관련 국가관리 방안 및 방향을 건의할 임무가 있다.

제12조. 세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원칙

1. 베트남 세관은 집중과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2. 관세총국 총국장은 각급 관세기관을 통일 관리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각급 관세기관은 상급기관의 관리와 지도를 받는다.

제13조. 세관의 조직체계

1. 베트남 세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 a) 관세총국
 - b)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의 관세국
 - c) 국경관문의 세관지국, 세관통제팀 및 기타 동급기관

2. 정부는 각급 관세기관의 임무, 조직, 활동; 관세공무원의 업무제도, 직책, 기준, 임금, 근속수당, 기타 보조제도; 세관회장, 기, 계급장, 제복, 세관증명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4조. 관세공무원

1. 관세공무원은 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라 선발, 교육, 사용되는 인력이다.
2. 관세공무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임무를 시행하며 청렴, 정직하고 기강있고 문화적이고 공손한 태도로 주어진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3. 관세공무원의 밀수에 대한 묵과, 동조행위, 통관절차 과정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뇌물수수, 임시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점용, 이익추구 행위 등을 엄중히 금한다.

제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제1목

총칙

제15조.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의 원칙

1.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는 물품,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하는 운송수단은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하며 법률규정에 따른 올바른 경로, 국경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1.a. 세관검사는 관세관련 국가관리를 보장하고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정보분석, 화주의 법규준수도 평가, 관세법률 위반에 관한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2.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3. 통관절차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4. 인력, 근무시간은 수출, 수입, 출경, 입경, 국경통과 활동에 부합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16조. 통관절차

1. 통관절차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에 따른다.
 - a) 세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의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작성 및 전송한다.
 - b)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을 이동한다.
 - c)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2. 통관절차 시, 관세공무원은 다음에 따른다.
 - a)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 b) 통관서류를 검사하고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 c)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과 기타 수수료를 징수한다.
 - d) 물품 및 운송수단의 통관을 결정한다.

제17조. 통관절차 장소

통관절차 장소는 국경관문 세관지국, 국경관문외 세관지국이다.

전자통관 절차시 통관서류 접수 및 처리장소는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의 관세사무소가 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제18조. 세관신고서의 신고 및 제출 기한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기한내에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2. 수출물품의 경우,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경하기 8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3. 출경, 입경하는 자의 휴대수화물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입경하는 시점 및 출경 운송수단이 승객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입경하는 자의 이동 전 후 위탁수화물의 경우,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4. 국경통과 물품, 운송수단의 경우, 물품,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물품, 운송수단이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5.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경의 경우, 항만관리공단이 해당 운송수단이 도선장소에 도착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이내 및 운송수단의 출경 1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6. 항공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경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업체가 승객에 대한 출경수속, 물품에 대한 수출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7. 철도, 육로, 수로를 통한 출입경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수단이 출경을 위한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9조. 관세공무원의 통관절차 기한

1. 관세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직 후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 등록, 검사한다. 통관서류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세관신고인에게 해당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세관신고인이 이 법 제16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통관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 후, 관세공무원이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a) 비율에 근거한 일부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 b)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중 수출, 수입 물품의 수량이 방대하고 검사가 복잡한 경우, 검사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기준8시간을 넘지 않는다.

c) 출경, 입경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의 경우, 수출, 수입 물품의 하역과 승객의 출입경 수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d)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은 이 법 25조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세관신고

1. 세관신고는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통일되게 시행된다.

2.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 상의 내용을 충실,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3. 세관신고인은 전자신고형식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통관절차 대리인

1. 통관절차 대리인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업무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인이다.

2. 통관절차 대리인은 관세법률과 세관신고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통관절차 대리인의 등록과 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2조. 통관서류

1. 통관서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세관신고서
- b) 상업영수증
- c) 물품매매계약서
- d)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 d')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 증명서류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다.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 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 일회신고가 허가된다.

제23조.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

1.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 a) 관세기관으로부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급받고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해 세관신고 이전에 관세공무원의 감시하에 물품을 미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 b) 미통관상태의 물품에 대한 관세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 검사한 물품에 대한 재실물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c)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제기, 고소할 수 있다.
- d)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d) 물품통관에 전자통관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기관이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의 서류,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세관신고 및 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0조, 제68조를 준수한다;
- b) 신고내용과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한 진실성, 업체에 보관된 서류와 전자통관 서류간 내용의 동일성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진다;
- c)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중 관세기관과 관세공무원의 결정과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 d) 통관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서류는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통관된 수출, 수입 물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회계증명서류 및 기타 증명서류는 법률에 규정된 기간동안 보관한다. 이 법 제28조, 제32조, 제68조에 규정된 관세기관의 검사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 d) 물품과 운송수단의 실물검사를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 e)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 g) 밀수, 무역사기, 탈세, 뇌물공여 등의 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24조. 세관활동지역 내 물품, 운송수단의 검사 책임

- 1. 세관활동지역 내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 물품, 출경, 입경 운송수단을 검사할 책

임이 있다.

2. 물품, 운송수단의 품질, 보건, 문화분야의 전문적 검사, 동식물검역이 필요한 경우, 관할 전문검사 국가기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3. 국경관문의 관세지국장은 국경관문의 전문검사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물품, 운송수단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경관문에서 국가기관의 책임과 협력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5조. 물품 및 운송수단의 통관

1.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2. 다음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 운송수단도 통관될 수 있다.
 - a) 통관서류 중 증명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으나 관세기관이 기한내 추후 제출에 동의한 경우
 - b)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은 완납하지 못하였으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세액납부의 유예가 허가된 수출입 물품 제외.
3. 화주, 운송수단주가 관세관련 행정처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4. 수출, 수입 허가여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물품이나 화주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수출,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 산정을 위해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가 필요한 경우, 화주가 이 조 제2항 제b호, 제3항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 자진산정에 근거한 세액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통관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은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5. 긴급한 요구가 있는 수출, 수입 물품의 통관은 이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세관감시

1.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는 다음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 a) 세관봉인 또는 기타 기술적인 방법
- b) 관세공무원의 직접감시

2. 세관감시 기간

- a) 수입 물품, 운송수단이 세관활동지역에 입경한 시점부터 통관되는 시점까지
- b) 수출물품 실물검사 시작시점부터 실제 수출 시점까지
- c) 국경통과 물품, 운송수단이 세관활동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는 시점까지

3. 화주, 운송지시자 또는 운송인, 통관절차 대리인은 물품과 세관봉인의 원상태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물품 또는 세관봉인의 원상태가 훼손된 경우, 더 이상의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 후 즉시 이를 가장 가까운 관세기관 또는 동 인민위원회에 알린다.

제27조.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통관절차시, 관세공무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

1. 법률, 세관업무 절차를 엄중히 집행하고 본인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책임진다.
2. 세관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 2a.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의 서류,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관신고인에 이를 문서로 요구한다.
3.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실시한다. 관세관련 법규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검열을 실시하기 위해 화주, 운송지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검사, 검열요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4. 관세기관의 물품 검사를 위한 분석 또는 감정자문을 위해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견본 추출을 실시한다. 물품의 정확한 코드와 품질을 확정하기 위해 분석결과, 감정결과를 사용한다.
5. 법률규정에 따른 세액과 수수료 징수를 위한 물품의 코드와 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세관신고인에게 물품과 운송수단에 관련된 정보, 증명서류의 제공을 요구한다.
6. 통관절차 장소와 수출입물품 검사장소에서 물품의 개폐, 환적, 하역을 감시한다.
7. 운송지시자, 운송인에게 규정에 따른 올바른 경로를 통한 이동을 요구한다.
8.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와 권한이 있다.

제2목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및 세관감시

제28조. 통관서류의 검사 및 등록

통관서류에 대한 검사,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서류는 다음과 같이 검사, 등록된다.

- a) 관세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화주의 통관서류는 세관신고서 상의 요구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세관신고서에 첨부된 증명서류 수량이 정확한 경우 등록된다.
- b) 이 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의 상세검사 후 등록된다. 관세공무원은 통관서류 접수 후 세관신고서 상에 요구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를 검사하여 세관신고서와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의 부합성을 확인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서를 등록한다. 세관신고서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유를 세관신고인에게 통보한다.

2. 전자통관 서류는 세관의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등록 및 분류된다.

제29조. 통관을 위한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 형식결정의 근거 및 권한

1.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 형식결정의 근거는 화주의 법규준수 이력, 국가의 수출, 수입 물품관리정책, 수출, 수입 물품의 성질, 종류, 출처 및 통관서류와 기타 수출, 수입 물품과 관련된 정보이다.
2. 통관서류를 접수 및 처리하는 관세기관의 장은 이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 형식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30조. 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품 실물검사 형식

1. 다음 하나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실물검사가 면제된다.
 - a)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수출물품, 조건부 수출물품을 제외한 수출물품
 - b) 외국에서 자유무역지대, 환적항,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물품; 국경통과 물품; 긴 급구조물품 국방 및 안보에 직접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인도적 원조물품 및 시한이 있는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 c) 투자사업의 면세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수입기기, 설비물품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관세관련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화주의 수출입 물품,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물품도 실물검사가 면제된다.
3. 관세관련 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화주의 수출, 수입 물품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물검사 면제에 속하는 물품이 관세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4. 이 조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기초자료의 정보분석, 세관식별 결과, 각국 관세기관, 법인, 개인으로부터 관세관련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5. 물품 실물검사는 관세공무원의 직접검사 또는 기술적 기기설비를 통한 검사, 기타 업무방법을 사용하며 물품의 통관서류가 등록되고 물품이 세관검사장소에 도착한 후 세관신고인 또는 합법적 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6. 동물, 식물,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물품, 기타 특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정부는 이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물품 실물검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1조. 세관신고인의 부재하에 실시되는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

1. 국경관문 세관지국장,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세관지국장은 다음의 경우 세관 신고인의 부재하에 물품 실물검사를 결정하고 이를 화주에게 통보한다.
 - a)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 b) 위생,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 c) 심각한 법률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 d)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신고인이 통관절차를 위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d') 세관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세관신고인의 부재하에 실시되는 세관 직접검사의 경우, 운송업체 대리인 또는 인근 읍, 면, 동, 리 인민위원회 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제32조. 통관후 세무조사

1. 통관후 세무조사는 관세기관의 검사활동으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a) 통관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해 화주,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 직접 수출입 법인, 개인이 관세기관에 신고, 제출, 제시한 통관서류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을 심사
 - b)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과정의 법규준수를 심사
2. 통관후 세무조사는 다음의 경우 실시된다.
 - a)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 수입관리관련 규정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b) 이 조 제2항 제a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료의 정보분석, 세관식별 결과, 각국 관세기관, 법인, 개인의 분석에 근거하여 통과후 검사를 결정한다.

3. 성, 성 합동, 중앙직항시 관세국장은 통관된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신고서 등
 록일로부터 5년간 통관 후 검사 결정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필요한 경우, 관
 세총국 총국장은 통관 후 검사를 결정서를 발행한다.
4. 관세공무원은 통관 후 검사결정서에 근거하여 업체가 보관중인 통관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회계증명서류 및 기타 증명서류를 직접검사하여 세관신
 고서와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 상의 정보를 대조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5. 검사과정 중, 관련 법인 및 개인은 관세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에 협조하고 관
 세기관의 검사에 필요한 회계증명서류, 정보,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통관 후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3조. 일시수출, 일시수입물품

1.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 일시수출, 일시수입 물품은 다음과 같다;
 - a) 전시회, 전람회, 물품소개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물품;
 - b)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기기, 설비, 용구;
 - c) 선박, 비행기의 수리,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 예비품;
 - d)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물품.
2. 일시수출물품과 일시수입물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재수입 또는 재수출
 되어야 하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일시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지 않거나, 일시수입된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고 판
 매, 기증, 교환된 경우, 수출, 수입 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건

부 수출, 수입 물품에 속하는 경우, 조건부 수출, 수입 물품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34조. 기증품, 선물

1. 물품이 기증품, 선물인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건부 수출, 수입 물품에 속하는 경우, 조건부 수출, 수입 물품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2. 수출,수입 금지품목 목록에 속한 물품의 기증,선물은 엄격히 금한다.
3. 기증품, 선물에 대한 면세한도는 정부가 규정한다.

제35조. 긴급용 수출, 수입 물품

1. 긴급용 수출, 수입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천재지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물품
 - b) 긴급구조를 위한 물품
 - c) 국방안보를 위한 물품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라 긴급한 요구가 있는 물품
2. 긴급용 수출, 수입 물품은 세관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통관된다.

제36조.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

1.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다.
2. 베트남과 인접한 국가간의 국경지대 거주민의 물품 매매, 교환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는다. 관세기관이 없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국경수비대의 검사와 감시를 받는다.

3.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국가기관의 협조, 국경지대 거주민의 물품매매, 교환 정책을 규정한다.

제37조. 우편을 통해 수출, 수입되는 물품

1. 우편을 통해 수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이 법의 규정을 따른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2. 세관신고를 위임받은 자가 우편용역업체인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인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물품은 통관 후에만 배송된다.

제38조.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상의 물품

1. 물품이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상의 용품인 경우, 통관절차는 불필요하나,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입경 운송수단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상의 직원, 승객에서 판매된 물품은 수출물품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수입 물품

1.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2.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업무를 규정한다.

제40조. 국경통과 물품

1. 국경통과 물품은 최초 국경관문과 마지막 국경관문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 영토내 이동 중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2. 육지를 통하지 않는 국경통과 물품 및 국경관문 내 창고에 보관된 국경통과 물품의 경우 국경통과허가서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육지를 통한 국경통과 물품, 국경관문 외 창고에 보관되었거나 베트남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국경통과 물품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3. 국경통과 물품에 대한 검사는 법률위반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4. 국경통과 물품은 베트남 관할 국가기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베트남 판매가 허가되며 수입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국경관문 변경 물품

1. 국경관문 변경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국경관문의 통관절차 장소에서 수출관문으로 이동되는 수출물품
 - b) 수입 국경관문에서 국경관문의 통관절차 장소로 이동되는 수입물품
 - c) 한 통관절차 장소에서 타 통관절차 장소로 이동되는 수출, 수입 물품

2. 국경관문 변경 물품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는다.
3. 수출, 수입 물품이 이동되는 두 장소가 국경관문 외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 장소이며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 관세국장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국경관문 변경물품과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제42조. 국경통과, 국경관문 이동 경로 및 시간

국경통과, 국경관문 변경 물품은 규정된 올바른 경로 및 국경관문을 적시에 통과하고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교통운송부는 국경통과 물품의 이동경로를 규정하고 관세총국장은 국경관문 변경 물품의 이동경로를 규정한다.

제43조. 이동재산(이사화물)

이동재산(이사화물)이 있는 개인, 가정, 법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 재산소유권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이동재산(이사화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4조. 출경, 입경하는 자의 수화물

1. 출경, 입경하는 자의 수화물은 국경관문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면세한도를 초과한 출경, 입경하는 자의 수화물은 수출, 수입 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경, 입경하는 자는 국경관문 창고에 수화물을 위탁 후 출경, 입경시 재수령할

수 있다.

3. 정부는 수화물 기준과 면세한도를 규정한다.

제45조. 기한을 초과하도록 화주가 나타나지 않는 투기, 분실, 유실물품의 처리

1. 물품주가 스스로 투기를 인정하거나 투기로 명백히 추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동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은 발생비용을 제한 후 국고에 납입된다.

법률을 위반한 징후가 있는 물품의 경우, 화주의 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분실화물의 경우, 180일 이내에 외국에서 잘못 위탁되었거나 베트남에서 분실된 물품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재수출될 수 있다. 수신자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신자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외국에서 유실된 물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경우, 발생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을 위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180일이 지나도록 화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관세기관이 투기, 분실, 유실된 물품을 밀수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밀수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4. 수입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인수자가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인수자가 나타나는 경우, 수입수속을 진행하고 벌금과 통관절차 지연으로 인한 발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목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내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제46조.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내 물품

1. 국내외 법인, 개인이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내 보관하는 물품은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2. 수입물품이 세액징수유예창고주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경우에만 세액징수유예창고로 반입이 허가된다.
3. 정부는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7조. 보세창고주, 세액징수유예창고주의 권한과 임무

1. 보세창고주는 법률규정에 따라 보세창고 물품보관계약서를 이행한다. 보세창고내 물품은 화주와의 합의에 따라 이동될 수 있으나 관세기관에 우선 통보해야 한다.

보세창고주는 45일 주기로 물품상태와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 관세국장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보세창고주는 법률규정에 따른 관세기관의 물품검사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2.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화주는 관세공무원의 감시하에 물품의 재포장, 분류, 견본추출이 가능하다. 법률규정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한 보세창고에서 타 보세창고로의 물품이전은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 관세국장이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화주는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기간동안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8조. 보세창고 내 물품보관 기한

보세창고내 물품보관 기간은 물품반입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있으며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 관세국장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49조.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의 설명 및 운영종료의 심사권한

관세총국 총국장은 보세창고의 설명 및 운영종료를 결정한다.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 관세국장은 세액징수유예창고의 설명 및 운영종료를 결정한다.

제4목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및 세관감시

제50조. 출경, 입경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장소

1. 운송수단은 출경, 입경시 반드시 베트남 국경관문을 통해야 한다.

입경 운송수단은 최초 입경 국경관문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경 운송수단은 마지막 출경 국경관문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타 장소를 통한 운송수단의 출경, 입경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51조. 출경, 입경, 국경통과, 국경관문 이동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의 경로, 시간

1. 출경, 입경, 국경통과, 국경관문 이동 운송수단은 세관활동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는 시점까지 규정된 경로를 통하고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2. 입경 베트남 운송수단은 세관활동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수입수속을 위해 운송수단 상의 수입물품 전체를 하역하는 시점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출경하는 베트남 운송수단은 물품을 적재하는 시점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는 시점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3. 출경, 입경, 국경통과, 국경관문 이동 운송수단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은닉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심각한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국경관문 세관지국장,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세관지국장, 세관통제 팀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출발을 일시연기하거나 운송수단의 정지를 결정한다. 검사는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결정자는 본인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

제52조.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신고 및 검사

1.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시, 운송수단주 또는 운송인은 통관절차를 위해 세관신고를 하고 운송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제시한다. 운송수단상의 수출, 수입 물품, 용품에 관한 정보와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세관신고 기한은 이 법 제18조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통관서류 검사, 운송수단 실물검사는 이 법 제19조 제2항 제c호, 제d호 및 제20조, 제22조 규정에 따른다.

운송증명 서류들이 세관검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운송수단 내 출경, 입경하는 자의 수화물, 수출, 수입 화물을 제외한 운송수단주 또는 운송인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53조. 출경, 입경 운송수단상의 환적, 국경관문 이동, 차량이동, 차량분리 및 하역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수출입 운송수단의 수출, 수입 화물, 수화물의 환적, 국경관문 이동, 차량이동, 차량분리, 하역은 관세기관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

환전, 국경관문 이동, 차량이동, 차량분리 물품의 외부포장은 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54조. 국내운송과 결합된 국제운송, 수출, 수입 화물운송과 결합된 국내운송

1.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관세총국이 정한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제운송수단은 국내 물품운송과 결합될 수 있다.

2.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관세총국이 정한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운송수단은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수출, 수입 화물의 운송과 결합될 수 있다.

제55조. 국방, 안보를 위한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국방 운송수단 및 국방,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정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검사와 세관감시를 받는다.

제56조. 공항관리공단, 항만관리공단, 국제철도역의 장과 관세기관의 협력 책임

공항관리공단, 항만관리공단, 국제철도역의 장은 선박, 비행기, 국제열차의 출발 도착시간, 장소, 물품의 하역시간을 국경관문 세관지국장에게 사전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5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 일시중단

제57조. 통관절차 일시중단의 원칙

1. 베트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화물에 대해 장기간 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별로 통관절차 일시중단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관세기관은 이 법 제58조 규정을 충족하는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 일시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이 법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일시정지 결정은 상업성이 없는 물품, 국경통과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8조. 통관절차 일시정지 요청의 조건

통관절차 일시정지 요청 시,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다음에 따른다.

1. 관세기관에 건의서, 지적재산권의 합법적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본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2. 부적합한 통관절차 일시중단 요청에 따른 피해와 기타 발생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잠정금액을 선납부하거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의 보증을 득한다.

제59조. 통관절차 일시중단의 구체적인 규정

이 법률과 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 일시중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목

우대, 면제 제도

제60조. 우대, 면제 제도

이 법에 규정된 우대 면제제도는 , 세관신고, 세관검사에 관한 우대, 면제를 포함한다.

제61조. 세관신고, 세관검사의 면제

1. 외교행랑, 영사행랑은 세관신고, 세관검사가 면제된다.
2. 외교면책특권을 가진 기관, 법인, 개인의 수화물, 운송수단과 기타 특별한 대상의 수화물, 운송수단은 세관검사가 면제된다.

제62조. 우대, 면제 제도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

외교행랑, 영사행랑이 베트남이 가입한 외교관계,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에 반하는 목적에 남용되었다는 증거가 있거나 수화물, 운송수단 상에 법률규정에 따른 수

출입금지품목, 우대, 면제 제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관세총국장은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제5장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방지에 관한 세관의 책임

제63조.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방지에 관한 세관의 임무

1. 본인의 임무와 권한 범위내에서 각급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방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2. 각급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예방방지임무가 부여된 전문팀을 설치한다.

제64조.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에 대한 책임 범위

1. 세관활동지역 범위 내에서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의 책임이 있다.

물품, 운송수단이 세관활동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시점에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행위를 발견한 기관, 법인, 개인은 이를 즉시 관세기관에 통보하여 검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관세기관은 세관활동지역 외에서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예방방지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물품, 운송수단이 세관활동지역을 벗어난 시점에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행위

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판단한 경우, 관할권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 검사, 처리를 실시한다.

3. 각 급 인민위원회는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예방방지 업무과정에 관세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지도한다.

제65조.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에 관한 예방방지 방안 시행과정에서의 관세기관의 권한

1.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을 주도적으로 예방방지하고 물품통관, 통관 후 검사를 위한 인력조직, 정보자료 수집, 업무방안을 적용하고 세관활동 관련 국내외정보를 수집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에 관한 비밀정보 제공자를 보호한다.
2. 세관활동지역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을 예방방지 한다.
3. 법률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찰활동을 실시한다.
4.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를 관련 기관, 법인, 개인에 요청한다.
5.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과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우편소포가 있는 경우, 우편용역 업체에 해당 우편소포, 수출입물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한다.
6.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방지 노력에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제66조.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행위 처리과정에서의 관세기관과 관세공무원의 권한

1.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물품의 은닉행위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경관문 세관지국장,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세관지국장, 세관통제 팀장은 행정위반 처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은닉한 자, 은닉한 운송수단, 은닉한 장소에 대한 수색과 은닉자, 운송수단을 임시 구금할 수 있다.
2.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관세관련 법령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권한이 있는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형사소송법률에 따라 사건과 피고를 기소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사건과 피고에 대한 기소와 조사는 형사소송법률 규정에 따른다.
3.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이행시 본인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67조.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예방방지를 위한 기술장비

1.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물품 예방방지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업무용 기술장비, 무기, 지원용품을 보유할 수 있다. 장비, 무기, 지원용품의 사용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2.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물품 예방방지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개인에 인력제공, 장비지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된 장비가 손상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이 보상한다.

제5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제68조. 신고, 산정 및 세액,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세관신고인의 책임

1. 세관신고인은 충실하고 기한에 맞는 신고, 세액 산정, 납부를 하고 본인의 신고, 산정에 책임진다.
2. 세액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액신고인은 이를 통관절차를 진행한 관세기관에 통보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한다.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신고, 산정, 납부와 수수료 납부과정에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4. 세액과 수수료 관련 관세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제69조. 세액과 수수료 징수업무에 관한 관세기관의 책임

1. 관세총국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수수료 징수업무를 통일되게 시행한다. 충실한 세액, 수수료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적용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2. 물품의 수출, 수입 수속을 진행하는 관세기관은 분장된 기능, 권한 내에서 세관 신고인의 세액의 신고, 산정 및 면세, 감세, 환세, 세액징수유예, 추징세액에 관하여 검사한다. 세액을 징수하고 세액납부를 관리한다. 세관신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부정확하게 산정한 경우, 이를 조정 후 세관신고인에 통보한다. 세액 추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과세시점, 납부기한

1.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시점, 납부기한은 세액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2. 관세기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처리를 기다리는 일시보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납부기한은 처리결정일로부터 산정된다.

제71조.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72조.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 및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1.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는 물품분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한다.

세관신고인의 품목분류 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확정을 위해 수출, 수입 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의 분석, 분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제기, 민원해결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2. 정부는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장 관세관련 국가관리

제73조. 관세관련 국가관리 내용

관세관련 국가관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베트남 세관의 발전전략, 기획, 계획을 수립 및 지도한다.
2. 관세관련 법규규범 문건을 공포 및 시행한다.
3. 관세관련 법규를 안내, 시행 및 홍보한다.
4. 세관조직과 활동을 규정한다.
5. 관세공무원 인력을 교육, 양성 및 강화한다.
6. 현대적 세관관리 기술, 과학응용 및 방법을 연구한다.
7. 관세관련 국가통계를 작성한다.
8. 민원/고소를 감사, 검사, 해결하고 관세관련 법률위반을 처리한다.
9. 관세관련 국제협력을 실시한다.

제74조. 관세관련 국가관리기관

1. 정부는 관세관련 국가관리의 통일을 기한다.
2. 재무부는 정부에 관세관련 국가관리의 통일된 시행을 책임진다.
3. 각부, 동급기관은 임무와 권한내에서 관세관련 국가관리 업무에 재무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임무와 권한 내에서 지방의 관세관련 법령 시행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75조. 민원제기, 고소, 기소권

1. 개인, 법인은 관세기관과 관세공무원의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관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세기관, 공무원의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가 법률에 반하며 본인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관세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개인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기관이 국가의 이익,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관세기관, 기타 국가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제76조. 민원, 고소 해결의 책임

1. 각급 관세기관은 권한에 속한 범위 내 행정결정,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권한을 벗어난 민원이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게 심의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한다.
2. 각급 관세기관은 권한에 속한 범위 내 고소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권한을 벗어난 고소가 접수된 경우, 이를 심사권한이 있는 기관, 단체에 이첩하고 고소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한다.

제77조. 민원, 고소 해결 기한, 수속 및 권한

1. 민원, 고소 기한 및 수속, 민원, 고소의 해결, 민원, 고소 해결 심사권한은 민원, 고소관련 법률과 관련법률 규정에 따른다.
2. 법인, 개인은 민원 또는 제소기간 중에도 관세기관, 기타 관할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또는 행정위반 처리결정에 따라야 한다. 관세기관, 관할 국가기관의 민원해

결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 결정, 판결에 따른다.

제7장 상훈 및 위반처리

제78조. 상훈

1. 관세관련 법률시행 과정의 성과가 있는 기관, 법인, 개인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 운송, 관세관련 법률위반 행위의 신고자, 발견자 또는 관세기관에 협조한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훈이 수여된다.
2. 임무를 충실히 시행한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훈이 수여된다.

제79조. 위반처리

1. 관세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 수출, 수입, 출경, 입경, 국경통과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 또는 관세관련 법률을 위반한 관세공무원은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기율처분 또는 형사처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8장 시행조항

제80조. 시행효력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세관법령(1990.2.20)은 이 법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상치되는 이전규정은 폐지한다.

제81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통관서류를 등록하였으나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법률의 적용

1.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통관서류를 등록하였으나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물품, 운송수단의 경우,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는 세관법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82조. 시행안내

정부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수정 관세청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7차 국회(2005. 6. 14)에서 통과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부록 IV.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²²⁾

(제45/2005/QH11호, 2005. 6. 14)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차 국회 제10회 의에서 51/2001/QH10호 의결에 따라 수정, 보완 됨)에 의거;
이 법률은 수출세, 수입세에 관해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조정범위

이 법률은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규정이다. 국경지대 거주민의 국경을 통한 매매, 교환물품 및 기타 교환 물품은 수출입물품으로 간주된다.

제2조. 과세대상

이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과세 대상이다.

22) 외교통상부 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2011.11)

1.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2.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제3조. 비과세대상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이다.

1. 베트남 국경, 국경관문을 빌려 이동되는 물품, 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
2. 인도적 원조물품, 무상 원조물품
3.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4. 수출 시 국가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석유가스 물품

제4조. 납세대상

이 법률의 제2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다.

제5조. 용어 해석

이 법률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보세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 지리적인 구역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다. 보세구역과 외부 구역간의 매매, 교환 관계는 수출입 관계으로 간주된다.
2. '자위를 위한 관세조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다.
3.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이다.
4. '종량세'는 수출,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액이다.
5. '이동재산(이사화물)'은 베트남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칭한다.
6.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다.

제6조. 국제조약의 적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세, 수입

세에 관한 조항과 상치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세액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기별로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적용을 규정한다.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

제8조.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

1.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2.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b)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통화는 베트남동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1.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3.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동화와 외국통화간 환율은 베트남중앙은행이 과세 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조. 세율

1.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한다.
 - a)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b)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c)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상응하여 각 품목별 우대세율에 비해 그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제11조. 물품수입시 자위, 반덤핑, 반보조금, 반차별을 위한 관세조치

이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과세 외에도, 수입물품에는 다음의 관세조치가운데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

1. 베트남으로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의 가중은 베트남으로의 외국 물품 수입에 대한 자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베트남에 수입되는 덤핑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덤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보조금이 지급되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4. 수입세에 차별대우가 있거나 기타 차별대우가 있는 국가, 국가연합 또는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차별대우 관세는 국제무역상 최혜국대우 및 국가대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세율표, 세율에 대한 공포 권한

1. 정부는 과세물품 목록 및 각 물품에 대한 세율에 관한 수출세율표, 각 물품에 대한 과세물품 목록 및 우대세율에 관한 수입세율표; 자위를 위한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반차별대우를 국회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수상은 필요한 경우, 절대세액과 절대세액 수준을 적용하는 물품들을 결정한다.

2. 국회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과세물품 목록 및 각 물품에 대한 세율에 관한 수출세

율표, 각 물품에 대한 과세물품 목록 및 우대세율에 관한 수입세율표에 의거, 재무부장관은 정부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물품에 관한 수출세, 수입세 세율 적용수준을 규정하며, 다음 각 원칙을 보장한다.

- a) 국회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과세항목 목록 및 세율 범위에 부합한다;
- b) 국가예산 확충과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c)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선택, 조건, 기한있는 국내 생산를 보호한다.

제3장 세액 신고 및 납세

제13조. 납세자의 책임

수출세, 수입세 납세자는 충실, 정확, 명백한 납세신고의 책임이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관세기관에 제출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국가 예산에 세액을 납부한다.

제14조. 과세 시점

수출세, 수입세 과세 시점은 납세자가 관세기관에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이다. 수출세, 수입세는 세율, 과세가격 및 과세시점에 베트남 국가은행 고시하는 교환환율에 따른 과세환율에 의해 산정된다.

제15조. 납부 기한

1. 수출세, 수입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 b) 수입물품이 소비물품인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 세액을 완납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한이나,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보증인의 책임규정은 이 조 제2항 제b호에 따른다.
- c)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물자, 원료인 경우,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275일이다. 특별한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주기, 물자-원료 비축에 부합하여 27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 d)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의 경우, 납부 기한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따른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기한만료일로부터 15일이다.
- d') 이 조 제1항 제c호 및 제d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수입물품의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2. 다음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 조 제1항 제c호, 제d호 및 제 d'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적용받는다.

- a)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까지 최소 365일 이상 수출, 수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세기관으로부터 무역사기, 탈세 행위가 없고, 미납세액 또는 미납벌금이 없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보고 제도를 잘 집행하고 있다고 확인받은 경우
- b) 신용기관 또는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기타 기관이 납세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될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간과 동일하나, 이 조 제1항 제c호 , 제d호 및 제 d'호에서 규정한 각 기한을 넘지 못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미납세액 및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이 항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제4장

면세, 감세, 환급 및 세액추징

제16조. 면세

다음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가 면세된다.

1. 박람회, 전시회, 상품소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2. 정부 규정에 따른 이동재산(이사화물)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부 규정 한도에 따라 베트남내에서 우대권,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기관, 개인의 수출, 수입 물품.
4. 가공 계약에 따라 외국을 위해 가공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베트남을 위한 가공을 위해 외국에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5. 출경, 입경 하는 자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른 휴대품 면세기준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
6.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다음을 포함한다:
 - a) 설비, 기계
 - b) 공장라인의 전용 운송수단 및 근로자 출퇴근용 운송수단

- c) 이 항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 전용 운송수단와 함께 수입되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악세사리
- d) 이 항 제a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와 관계있는 공장라인에 설치되는 설비, 기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또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악세사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물자
- e)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건설물자
- f)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상업센터, 기술용역, 슈퍼마켓, 골프장, 여행단지, 체육단지, 오락여가단지, 진료병원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회계, 자문용역 분야 투자사업계획을 위한 정부 규정 목록에 따른 최초 수입 설비물품.

이 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 및 제 e호에 각각 규정된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세 면세는 투자규모 확장, 기술교체, 기술혁신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7.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 다음을 포함한다.

- a) 석유가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기계, 교체 부분품, 전용운송수단
- b)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물자

8.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 부분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술 - 재료, 과학 서적을 포함한다.

9. 투자권고 특별분야 영역목록 또는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목록에 속하는 사업계획의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 부품은 생산시작일로부터 5년 안에서 수입세가 면제된다.

10.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할 때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된 물품. 외국에서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시 그 물품을 구성하는 수입 원료, 부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11. 정부 수상이 결정하는 기타 구체적인 경우

제17조. 면세 검토

다음의 경우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면세 검토대상이다.

1. 국방, 안보, 교육 및 훈련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이 법률 제16조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과학연구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2. 정부 규정 한도내에서 외국 기관, 개인이 베트남 기관, 개인에게 기증하는 선물, 기증품, 견본,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18조 감세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 수출, 수입 물품이 훼손, 분실 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된다.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한다.

제19조. 환급

1. 다음의 각각 경우 납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 a) 수입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및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 b)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수출, 수입 물품이 실제로 수입, 수출되지 않은 경우

- c)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 보다 실제 수출, 수입이 적은 경우
- d)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가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 d') 이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된 면세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으로 수출세,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 e)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 해야 하는 경우
- g)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 h) 수입물품이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 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으로서 건설, 조립공정, 생산업무에 사용되거나, 기타 목적으로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2. 세관신고,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류를 검사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으면 과납세액에 대해 환급된다.

제20조. 환급 책임 및 기한

1. 환급심사 국가기관은 충분한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환급관련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심사 권한있는 국가기관은 서류보완 요청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도록 환급이 지체되는 사유가 환급심사 담당 국가기관의 실수에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외에 환급지연되는 날로부터 환급되는 날까지 환급시점 무역은행 대출이자율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21조. 세액 추정

이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면세, 면세검토된 물품이 있는 납세자가 나중

에 면세, 면세검토의 근거가 된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적정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세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 추정세액 계산의 근거 및 추정액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5장

민원제기 및 위반처리

제22조. 민원제기 및 민원해결

납세자는 관세기관의 세액, 벌금액, 처벌형식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액, 벌금을 납부하고 처벌형식을 따라야 하나 동시에 민원, 고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제23조. 납세자에 대한 세액관련 위반처리

납세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규정된 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세액관련 위반처리결정에 명시된 기한 만료일을 지나 세액,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과 벌금 납부이외에도 연체된 금액의 0.1% (1,000분의 1)가 연체일자에 따라 매일 가산된다. 연체일이 90일을 넘는 경우,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당한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맞는 세관신고,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질과 위반정도에 따라 조세에 관한 행정위반으로 처리된다.

3. 허위 납세신고, 탈세의 경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의 납부 외에도 사안의 성질과 위반정도에 따라 사기세액의 1 내지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4.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른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의 시행이 강제된다.
 - a)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에서 인출하여 송금한다.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은 관세기관 또는 국가심의기관의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라 국고에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할 책임이 있다.
 - b)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관세기관은 미납된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관세기관이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도 납세자가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산을 경매할 수 있다.
 - c)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입수속을 하지 않는다.
5. 사기 또는 탈세 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세기관은 사기,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5년간 해당 행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할 책임이 있다. 오류가 있었던 경우, 관세기관은 오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365일 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세액을 추징 또는 환급할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작은 오류들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각종 처벌이 적용 면제된다.
6. 고액 탈세 또는 탈세 행위로 행정위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제24조. 세관공무원의 위법 또는 관련있는 기타 개인에 대한 처리

1. 세관공무원 또는 관련있는 기타 개인이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세액을 점용하거나 탈취한 경우, 점용, 탈취한 세액을 전부 국고에 배상하고, 위법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2. 세관공무원의 책임정신이 부족하여 고의적으로 이 법률의 위반행위자를 묵과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의 성질, 정도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사안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경고, 행정처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조직

제25조. 정부의 권한 및 책임

정부는 수출세, 수입세 징수업무의 관리를 통일하고, 이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 23조의 각 조에 규정된 면세, 면세검토, 감세검토, 환급, 추징세 및 조세관련 위반처리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6조. 재무부장관 및 성, 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의 책임

1. 재무부장관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징수의 조직, 관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2. 성, 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은 지방의 수출세, 수입세 징수업무 조직을 조정 지도

할 책임이 있다.

제27조. 관세기관의 책임

관세기관은 이 법률과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검사 및 징수할 책임이 있다.

제7장 시행 조항

제28조. 시행효력

1.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2. 1991년 수출세, 수입세법, 1993년 수출세, 수입세법 수정법, 1998년 수출세, 수입세법 일부 조항 수정법을 폐지한다. 국내투자권고법 제25조 수출세, 수입세관련 규정,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제47조, 과학기술법 제42조 제 2항 및 석유가스법 제 34조를 폐지한다.
3.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 투자우대증명서의 권고에 따라 이 법률의 수출세, 수입세 우대세율보다 높은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우대세율을 계속 적용한다. 투자허가서, 투자우대증명서에 따른 우대세율이 이 법률의 수출세, 수입세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 이 법률의 우대세율을 남은 우대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상세규정 및 시행안내

정부는 이 법률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한다.

부록 V. 베트남 소비세법²³⁾

Law on Excise Tax

(No. 27/2008/QH12)

Pursuant to the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s the Law on Excise Tax.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Law provides for taxable and non-taxable objects, and payers, bases, refund, deduction and reduction of excise tax.

Article 2. Taxable objects

1. Goods:

- (a) Cigarettes, cigars and other tobacco preparations used for smoking, inhaling, chewing, sniffing or keeping in mouth;
- (b) Liquor;
- (c) Beer;
- (d) Under-24 seat cars, including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with two or more rows of seats and fixed partitions between passenger holds

23) 베트남 관세총국(www.customs.gov.vn)에서 발췌한 영문 해석본임. 본 영문본은 참조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원 법령에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 재확인 및 관련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함

and cargo holds;

- (e) Two- and three-wheeled motorcycles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125 cm³;
- (f) Aircraft and yachts;
- (g) Gasoline of all kinds, naphtha, reformed components and other components for mixing gasoline;
- (h) Air-conditioners of 90,000 BTU or less;
- (i) Playing cards;
- (j) Votive gilt papers and votive objects.

2. Services:

- (a) Dance halls;
- (b) Massage parlors and karaoke bars;
- (c) Casinos; prize-winning video games, including jackpot and slot games and games on similar machines;
- (d) Betting;
- (e) Golf business, including the sale of membership cards and golf playing tickets;
- (f) Lottery business.

Article 3. Non-taxable objects

Goods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2 of this Law are not subject to excise tax in the following cases:

- 1. Goods which are directly exported by producers or processors, or which are sold or entrusted by these producers or processors to other business establishments for export;
- 2. Imported goods, including:
 - (a) Goods as humanitarian aid or non-refundable aid; gifts for state agencies, political organizations,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socio-political-professional organizations, social organizations,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people's armed forces units; and donations or gifts for individuals in Vietnam within the quota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 (b) Goods transited or transported via Vietnamese border gates or borders, and goods transported to and from border gates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s;
 - (c)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and temporarily exported for re-import which are not subject to import duty or export duty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the law on import duty and export duty;
 - (d) Personal effects of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ithin diplomatic immunity quotas; personal belongings within duty-free luggage quotas; and goods imported for duty-free sale under law;
3. Aircraft and yachts used for commercial transportation of cargoes, passengers and tourists;
 4. Ambulances; prison vans; hearses; cars designed with both seats and standing places for transporting 24 or more people; cars running in recreation, entertainment and sports areas which neither are registered for circulation nor move on roads;
 5. Goods imported from abroad into non-tariff areas, goods sold from the inland into non-tariff areas for use only in non-tariff areas, and goods traded between non-tariff areas, except under-24 seat cars.

Article 4. Taxpayers

Excise taxpayers include producers and importers of goods and providers of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excise tax.

Exporters that purchase excise tax-liable goods from producers for export and do not export but sell them domestically shall pay excise tax.

Chapter II

TAX BASES

Article 5. Tax bases

Excise tax bases include the taxed price of a taxable goods or service and the tax rate. The payable excise tax amount is the excise taxed price multiplied by the excise tax rate.

Article 6. Taxed price

The excise taxed price of a goods or service is the goods selling price or the service charge, exclusive of excise tax and value-added tax. Specifically:

1.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it is the selling price set by the producer;
2. For imported goods, it is the import-duty calculation price plus the import duty. For imported goods eligible for import duty exemption or reduction, it is exclusive of the exempted or reduced import duty amount;
3. For processed goods, it is the taxed price of the goods sold by processing-ordering establishment or the selling price of the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t the same time with the time of goods sale;
4. For goods sold on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it is the one-off selling price of such goods, exclusive of the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interest;
5. For services, it is the service charge set by the service provider. The service provision in a number of cases is specified as follows:
 - (a) For golf business, it is the selling price of the membership card or golf-playing ticket, inclusive of the golf playing charge and deposit (if any);
 - (b) For casino, prize-winning video game and betting business, it is the turnover from such business minus the prize already paid to customers;
 - (c) For dance hall, massage parlor and karaoke bar business, it is the turnover from such business.
6. For goods and services used for barter, internal consumption or donation, it is the excise taxed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t the time of barter, internal consumption or donation.

Excise taxed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e inclusive

of additional charges and revenues (if any) enjoyed by business establishments. Taxed prices are calculated in Vietnam dong. In case taxpayers have foreign-currency turnover, foreign-currency amounts must be converted into Vietnam dong at the average exchange rate o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market, announced by the State Bank of Vietnam at the time of turnover generation, for determination of taxed prices.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is Article.

Article 7. Tax rates

Excise tax rates for goods and services are specified in the Excise Tariff below:

EXCISE TARIFF

No.	Goods or services	Tax rate(%)
I	Goods	
1	Cigarettes, cigars and other tobacco preparations	65
2	Liquor	
	(a) Of 20° proof or higher	
	- From January 1, 2010, through December 31, 2012	45
	- From January 1, 2013	50
	(b) Of under 20° proof	25
3	Beer	
	From January 1, 2010, through December 31, 2012	45
	From January 1, 2013	50
4	Under-24 seat cars	
	(a) Passenger cars of 9 seats or fewer,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 Of a cylinder capacity of 2,000cm ³ or less	45
	- Of a cylinder capacity of between over 2,000cm ³ and 3,000cm ³	50
	-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3,000cm ³	60
	(b) Passenger cars of between 10 seats and under 16 seats,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30
	(c) Passenger cars of between 16 seats and under	15

	24 seats,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d)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15
	(e) Cars running on gasoline in combination with electricity or bio-fuel, with gasoline accounting for not more than 70% of the used fuel	70% of the tax rate for cars of the same kind as specified at Points 4a, 4b, 4c and 4d of this Article
	(f) Cars running on bio-fuel	50% of the tax rate for cars of the same type as specified at Points 4a, 4b, 4c and 4d of this Article
	(g) Electrically-operated cars	
	- Passenger cars of 9 seats or fewer	25
	- Passenger cars of between 10 seats and under 16 seats	15
	- Passenger cars of between 16 seats and under 24 seats	10
	-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10
5	Two-and three-wheeled motorcycles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125cm ³	20
6	Aircraft	30
7	Yachts	30
8	Gasoline of all kinds, naphtha, 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 components for mixing gasoline	10
9	Air conditioners of 90,000 BTU or less	10
10	Playing cards	40
11	Votive gilt papers and votive objects	70
II	Services	
1	Dancehalls	40
2	Massage parlors and karaoke bars	30
3	Casinos and prize - winning video games	30
4	Betting	30
5	Golf business	20
6	Lottery business	15

Chapter III

TAX REFUND, DEDUCTION AND REDUCTION

Article 8. Tax refund and deduction

1. Excise taxpayers may have the paid tax amounts refunded in the following cases:
 - (a)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 (b) Goods which are raw materials imported for export production and processing;
 - (c) Finalization of overpaid tax amounts upon merger, consolidation, separation, split-up, dissolution, bankruptcy, ownership change, enterprise transformation or operation termination;
 - (d) Upon issuance of tax refund decisions by competent agencies under law, and cases of excise tax refund under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The excise tax refund under Points a and b of this Clause is applicable only to actually exported goods.

2. Taxpayers that produce excise taxable goods from raw materials for which excise tax has been paid and that can produce lawful documents on tax payment may have the tax amounts paid for raw materials deducted upon the determination of payable excise tax amounts at the stage of production.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is Article.

Article 9. Tax reduction

Taxpayers that produce excise taxable goods and face difficulti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accidents are entitled to tax reduction.

The tax reduction level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extent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accidents but must neither exceed 30% of the payable tax amount in the year the damage occurs nor exceed the balance between the value of damaged assets and the received compensation (if any).

Chapter IV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10. Effect

1. This Law takes effect on April 1, 2009;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liquor and beer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2010.
2. To annul Excise Tax Law No. 05/1998/QH10; Law No. 08/2003/QH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Excise Tax Law; and Article 1 of Law No. 57/2005/QH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Excise Tax Law and Value-Added Tax Law, except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liquor and beer which continue to be effective through December 31, 2009.

Article 11. Implementation guidance

The Government shall detail and guide the articles and clauses of this Law as assigned, and guide other necessary provisions of this Law to meet state management requirements.

This Law was passed on November 14, 2008, by the XI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4th sessio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NGUYEN PHU TRONG

부록 VII. 물품 라벨링 규정²⁴⁾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ON LABELING OF GOODS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December 25, 2001 Law on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June 14, 2005 Commercial Law;

Pursuant to the April 27, 1999 Ordinance on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Pursuant to the December 24, 1999 Ordinance on Goods Quality;

At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REE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1. This Decree provides for contents, ways of presentation and state management of labels of goods circulated in Vietnam, exported and imported goods.
2. The following goods shall not be regulated by this Decree:
 - (a) Immovables;
 - (b)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after participation in fairs or exhibitions; transited goods, goods

24) 베트남 관세총국(www.customs.gov.vn)에서 발췌한 영문 해석본임. 본 영문본은 참조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원 법령에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 재확인 및 관련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함

transported from border gate to border gate;

- (c) Gifts, presents; personal effects of persons on entry and exit; moving property.

Apart from the objects specified at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depending on the market development, the state management agency in charge of goods labeling shall propose additional one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This Decree shall apply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anufacturing and trading in goods in Vietnam;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xporting and importing goods.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1. Goods label means written, printed, drawn or photocopied words, drawings or images which are stuck, printed, pinned, cast, embossed or carved directly on goods or their commercial packings or on other materials attached to goods or their commercial packings.
2. Labeling of goods means the presentation of necessary and principal contents about goods on their labels in order to help consumers identify the goods and serve as the basis for purchasers to select, consume and use such goods, and for manufacturers and traders to advertise their goods, and for functional agencies to conduct inspection and supervision.
3. Original label of goods means the initial label attached to goods.
4. Supplementary label means a label showing compulsory contents of the original label of goods translated from a foreign language into Vietnamese and additional compulsory contents in Vietnamese as required by law which do not yet appear on the original label.
5. Commercial packing of goods means packing containing goods and circulated

together with such goods.

Commercial packings of goods include holding packings and exterior packings:

- (a) Holding packing means packing in direct contact with and directly holding goods, forming the shape of goods, or tightly covering goods by their shape;
 - (b) Exterior packing means packing used to cover one or several units of goods contained in holding packings.
6. Circulation of goods means activities of displaying, transporting or storing goods in the process of goods sale and purchase, except the transport of goods by impor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rom the border gate to a storehouse.
 7. Name and address of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goods means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or impor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or agent according to the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subject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is Decree.
 8. Quantity of goods means the quantity of goods expressed in net weight, net volume, actual size or the count of goods.
 9. Date of manufacture means the point of time by which the manufacture, processing, assembly, bottling, packaging or another activity is completed as the last finishing stage of the goods.
 10. Expiry date means the point of time beyond which the goods shall not be permitted for circulation.
 11. Preservation period means the duration beyond which the goods shall not assure its original quality and usage value.
 12. Origin of goods means the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 whole goods is manufactured or the final processing stage is carried out for good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which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many countries and/or territories.
 13. Ingredients of goods means materials, including also additiv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goods and existing in finished products, even when the form of such materials has been altered.

14. Ingredient quantity means the quantity of each kind of material, including additiv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15. Instructions on use, preservation means information about the use, necessary conditions for use and preservation of the goods; hazard warnings; and ways of dealing with hazardous incidents.

Article 4.- Application of treaties

In case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contain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is Decree, the provisions of such treaties shall apply.

Article 5.- Goods which require labels

1.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imported and exported goods must have labels prese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except for cases specified in Clauses 2, 3 and 4 of this Article.
2. Goods which do not require labels:
 - (a) Goods which are raw and fresh foodstuffs, unpacked processed foodstuffs for sale directly to consumers;
 - (b) Goods which are unpacked fuels or materials (agricultural, aquatic or mineral), construction materials (bricks, tiles, lime, sand, rock, cement, colored earth, mortar, commercial concrete mixtures), scraps (discharged from production and business) for direct sale to consumers as agreed upon.
3. In case foreig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import Vietnamese goods request the labeling of goods as stipulated in contracts for goods sale and purchas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requests, expor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s as contracted, provided that such requests do not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goods and

violate the laws of Vietnam and importing countries.

4. Goods in the domains of security and defense; goods which are radioactive substances, goods used in emergency circumstances to overcome disaster consequences, epidemics; means of transport by rail, water or air; and goods which are confiscated by state agencies and put up for auction or liquidation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Specialized management ministries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ssuing regulations on labeling of goods specified in this Clause.

Article 6.- Position of goods labels

1. Goods labels must be attached to goods or commercial packings thereof in a position where the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can be easily and fully noticeable without requiring detachment of the goods' details or components.
2. In case it is disallowed or impossible to open exterior packings, labels containing all compulsory contents must be attached to exterior packings.
3. If compulsory contents cannot be fully presented on a label, then:
 - (a) Contents, including name of goods; name of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goods;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and origin of goods, must be shown on the label;
 - (b) Other compulsory contents must be presented in documents supplied together with the goods and the place where such information is presented must be indicated on the goods labels.

Article 7.- Size of goods labe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labeling goods shall determine by

themselves the size of goods labels and, however, must ensure that such labels show all compulsory contents specified in Articles 11 and 12 of this Decree, which are easily readable by naked eyes.

Article 8.- Colors of letters, signs and images shown on goods labels

Colors of letters, numerals, drawings, images, marks and signs shown on goods labels must be clear. For compulsory contents as required, the color of letters and numerals must contrast with the label's background color.

Article 9.- Languages used on goods labels

1.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must be in Vietnamese, except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4 of this Article.
2. For goods domestically manufactured and circulated, their labels, apart from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this Article, may contain information in another language. Contents in another language must be similar to those in Vietnamese. The size of letters in another language must not be bigger than that of contents in Vietnamese.
3. If labels of goods imported into Vietnam do not contain or fully contain compulsory contents in Vietnamese, they shall be kept together with supplementary labels showing compulsory information in Vietnamese. Contents in Vietnamese must be similar to those of the original label.
4. The following contents may be presented in other languages of Latin origin:
 - (a)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of medicines for humane use, in case there are no corresponding Vietnamese names;
 - (b)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enclosed with chemical formulas or chemical composition formulas;
 - (c)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of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in case they cannot be translated into Vietnamese or

their Vietnamese translations are meaningless;

(d) Names and addresses of foreign manufacturing or franchising enterprises.

Article 10.- Responsibility for goods labeling

Contents shown on goods labels, including supplementary labels, must be truthful, clear, precise and correctly reflect the substance of the goods.

1. For goods manufactured, assembled, processed or packaged in Vietnam for domestic circulation, their manufactur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 responsible for goods labeling.
2. For goods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Vietnam for export, ex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 responsible for goods labeling.

In case goods cannot be exported and are returned for circulation in the countr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fore putting such goods into circulation, label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3. For goods imported into Vietnam with original labels unconforma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im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make supplementary labe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3, Article 9 of this Decree before putting such goods into circulation together with their original labels.

Chapter II

CONTENTS AND WAYS OF LABELING OF GOODS

Article 11.- Compulsory contents which must be shown on goods labels

1. Goods labels must show the following information:
 - (a) Name of goods;
 - (b)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goods;
 - (c) Origin of goods.

2. Apart from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depending on the substance of each kind of goods, compulsory contents stipulated in Article 12 of this Decree and relevant specialized laws must be shown on labels.

Article 12.- Contents which must be shown on label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1. Food: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2. Foodstuff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 Drinks (excluding alcohol):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 Alcohol:
 - (a) Volume;
 - (b) Ethanol content;

- (c) Instructions on preservation (for wines).
5. Cigarett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6. Food additiv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7. Medicines for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8. Vaccines, biologicals for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9. Pharmaceutical material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preservation (conditions).

10.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technical specification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11. Cosmetic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2. Chemicals for domestic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3. F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4.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for animal health: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5. Veterinary drugs, biologicals for use in fishery: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6. Plant protection drug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7. Plant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8. Animal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9. Aquatic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0. Children's toy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21. Textile, garment, leather and footwear products:
- (a) Composition or quantitative compositions;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2. Plastic and rubber produc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Composition;
- (d) Technical specification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23. Paper, cardboard, carton: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24. Teaching and learning aids:

- (a) Quantity;
- (b) Technical specifications.

25.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cientific, educational and art publications:

- (a) Publisher (manufacturer), printer;
- (b) Name of author or translator;
- (c) Publishing permit;
- (d) Technical specifications (size, number of pages).

26. Musical instruments:

Technical specifications.

27. Sport and physical training tool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Composition;
- (d) Technical specifications;
- (e) Use instructions.

28. Wood furniture: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9. Porcelain, ceramic and glass product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Use instructions, preservation instructions.
30. Fine arts and handicraft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1. Domestic metal appliance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2. Gold, silver, gems:
- (a) Quantity;
 - (b) Quantitative composition or technical specifications.
33. Labor protection, fire prevention and fight equipment: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 (e) Technical specifications;
 - (f)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g)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4.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5. Informatic, communicatio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6. Machines, mechanical equipment: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7.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equipment and device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8. Metallurgical products:
- (a) Quantity;
 - (b) Component quantities;

- (c) Technical specifications.
39. Fishing gear: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0. Cars:
- (a) Model;
 - (b) Self weight;
 - (c) Tonnage;
 - (d)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 (e) Number of certificate of type approved;
 - (f) Year of manufacture.
41. Mopeds, motorcycles:
- (a) Model;
 - (b) Self weight;
 - (c) Cylinder capacity;
 - (d) Number of certificate of type approved;
 - (e) Year of manufacture.
42. Special-use vehicles:
- (a) Model;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Year of manufacture.
43. Bicycles: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4. Spare parts of means of transport: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5. Construction and interior decoration materials:
- (a) Quantity;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Month of manufactur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6. Petroleum products:
- (a) Quantity;
 - (b) Composition;
 - (c)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7. Detergen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d)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 on use.
48. Chemical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composition quantities;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9. Fertilizer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composition quantities;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50. Industrial explosiv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quantitative composition;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specialized management ministries in, amending and supplementing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Article 13.- Names of goods

Names of goods shown on labels shall be given by goods manufacturing or trad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Names of goods must not lead to misunderstanding about the substance and uses of goods.

In case the name of an ingredient is used as the name or part of the name of the goods, the quantity of such ingredient must be shown, except for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4, Article 18 of this Decree.

Article 14.- Names and address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Names and address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shall be shown specifically as follows:

1.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goods,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establishment.
2. For goods imported for circulation in Vietnam,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3. For goods imported into Vietnam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cting as sale agents directly for foreign traders,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acting as agents to sell such goods.
4. For goods franchised or permitted by another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eir labels must, apart from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s 1, 2 and 3 of this Article, additionally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ranchising or permit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rticle 15.- Quantity of goods

1. For goods with their quantities expressed in units of measurement, such units of measurement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ese law on measurement.
2. For goods with their quantities expressed in quantity, such quantity must be expressed in cardinal numbers.
3. In case there are different units of goods contained in a commercial packing, the quantity of each unit of goods and the aggregate quantity of all units of goods or the quantity of each unit of goods and the number of units of goods must be shown.
4. The ways of presenting goods quantities are stipulated in Appendix I to this Decree.

Article 16.- Date of manufactur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1. The date of manufactur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of goods shall be presented in the order of date, month and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Each number indicating the date, month or year shall consist of two numerals; the number indicating the year may consist of four numerals. The numbers indicating the date, month and year of a point of time must be presented on the same line.

In case the month of manufacture is required to be shown, it shall be shown in the order of month and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In case the year of manufacture is required to be shown, the number indicating the year shall consist of four numerals indicating the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2. For goods the labels of which must contain such compulsory contents as date of manufacture and expiry date or date of manufacture and preservation period as stipulated in Article 12 of this Decree, if such labels have shown the date of manufacture as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shall be permitted to be expressed in a length of time starting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3. Goods with their points of time shown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e listed in Appendix II to this Decree.

Article 1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shall be shown as follows: The words "Produced at" or "Manufactured at" or the word "origin" shall be followed by the name of the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 goods are made.

For goods manufactured in Vietnam for domestic circulation, if the address of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manufactured has been shown, the origin of goods shall not be required to be shown.

Article 18.- Ingredients, ingredient quantities

1. Ingredients to be shown shall include names of materials, including additives which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and exist in finished products, even when the form of such materials has been altered.

If names of ingredients are shown on labels of good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attention to the goods, the quantities of such ingredients must be shown.

2. Ingredient quantities to be shown shall include ingredients together with the quantity of each ingredient.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tate of goods, ingredient quantity shown may be the weight of such ingredient per unit of product or one of these ratios: weight to weight; weight to volume; volume to volume, percentage of weight; or percentage of volume.

3. For certain kinds of goods, the presentation of their ingredients and ingredient quantities shall be as follows:

- (a) For foodstuffs, their ingredients must be presented in the order of high to low weight;

For additives, the name of the category of additives and the name of the additive and international code (if any) must be shown; for additives which are flavorings, sweeteners or colorings, apart from the above-mentioned contents, whether such additives are "natural" or "synthetic" must be indicated;

- (b) For medicines for human use, vaccines, medical bio-products, biologicals, veterinary drugs and plant protection drugs,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active elements must be shown;

- (c) For cosmetics, their ingredients, including additives, must be shown;

- (d) For domestic metal appliances and articles created from a principal material which determines their usage value, the names of ingredients of the principal material shall be shown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goods but the goods'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are not required to be shown.

4.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which are shown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re included in Appendix III to this Decree.

Article 19.- Technical specifications,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1. For electric and electronic goods, machines and equipment, their basic technical specifications must be shown.
2. Medicines for human use, vaccines, medical bio-products, biologicals, veterinary drugs and plant protection drugs, the following must be shown:
 - (a) Indications, uses and contraindications (if any) of medicines;
 - (b) Registration number, manufacture lot batch, preparation form and packing specifications;
 - (c) Signs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each kind of medicine according to current regulations.
3. For ingredients or substances in compound ingredients of goods of special categories which contain preservatives with prescribed dosage and included on the list of those which may be allergic or harmful to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the names of preservatives accompanying these ingredients must be shown.
4. For goods or goods ingredients which have been x-rayed or genetically modified, their labels shall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reaties to which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5. Technical specifications, information and warnings on hygiene and safety of goods which are presented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s 2 and 3 of this Article are included in Appendix IV to this Decree.

Article 20.- Other contents of goods labe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may print other contents on goods labels. Such additional contents must not contravene the laws and must be truthful, precise and true to the substance of goods, not conceal or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compulsory contents of the labels.

Chapter III

ST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GOODS LABELS

Article 21.-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for performing the unified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nationwide with the following specific tasks:

1. Drafting and submitting to competent state agencies for promulgation or promulgating according to its competence legal documents on goods labeling;
2. Disseminating and propagating policies and laws, organizing professional guidance and training in goods labeling.
3. Supervising and inspecting the observance of legal documents on goods labeling.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settling and handling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4. Stipulating the announcement of goods labels.
5. Organizing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a database on goods labels.

The General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Quality Control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assi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shall,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ompetence, have to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Basing themselves on the goods under their management,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shall guide in detail contents and ways of presentation of labels after consult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Responsibilities of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tasks and powers, perform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in localities.

Chapter IV

HANDLING OF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Article 24.- Competence to handle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People's police, customs, market management, goods quality management and specialized inspection and other agenc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assigned functions, tasks and powers, shall, when detecting law-breaking acts related to goods labeling, have the right to handle such acts according to current provisions of law.

Article 25.- Handling of violations committed by production, trading, agency, importing and ex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law on goods labeling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ir violations,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or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if causing damage, they shall have to pay compensations theref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

Article 26.- Handling of violations committed b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f state management agencies

Those who abuse their positions and powers to hinder lawful activities or violate the law on goods labeling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ir violations,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or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if causing damage, they shall have to pay compensations theref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

Article 27.- Settlement of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Compete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have to settle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related to goods labe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on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and goods labeling,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law.

Chapter V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28.- Implementation effect

1. This Decree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its publication in "CONG BAO."
2.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labeling of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and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nd Decision No. 95/2000/QD-TTg of August 15, 2000, adjust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contents of the

Regulation on labeling of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and exported and imported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shall cease to be effective a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3. Goods which have labels presented under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and Decision No. 95/2000/QD-TTg of August 15, 2000, and were put into circulation on the market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shall be permitted for continued circulation.

Article 29.-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have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ree.
2. Ministers, heads of ministerial-level agencies, heads of government-attached agencies and presidents of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have to implement this Decre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Prime Minister

NGUYENTANDUNG

Appendix I

REGULATIONS ON WAYS OF PRESENTATION OF GOODS QUANTITIE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Ordinal number	State, form or category of goods	Way of presentation
1	- Solid or gaseous goods.	- Net weight.
	- Mixed solid and liquid	- Net mixed weight and weight of solid

	goods.	substances.
	- Goods being compressed gas.	- Net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net weight of pressurized containers (or net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aggregate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pressurized container).
2	- Pasty goods.	- Net weight or volume.
	- Pasty goods contained in sprayers.	- Net weight of both pasty and pressurizing substance.
3	- Liquid goods.	- Net volume at 200C.
	- Liquid goods contained in sprayers.	- Net volume at 200C, including both liquid and pressurizing substances.
4	Medicines for human use; veterinary drugs; plant protection drugs:	
	- In pellets.	- Quantity of pellets, weight per pellet.
	- In powder.	- Net weight.
	- In liquid form.	- Net volume.
	- Sexual stimulants for fish.	- International unit.
5	Plant seeds:	
	- Seeds.	- Net weight.
	- Seedlings.	- Seedling.
6	Aquatic seeds:	
	- Artermia eggs.	- Net weight (g).
	- Unicellular plant seeds.	- Quantity of cells.
	- Multicellular plant seeds.	- Net weight.
7	Goods which are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f their surface	Sizes of surface: length and width or diameter or diagonal.
8	Goods in sheet form arranged in plates.	Thickness, area or length x width of a plate.
9	Goods in sheet form arranged	Thickness, width of sheet and length or

	in rolls.	net weight of a roll.
10	Goods in fibers or bars.	Section or equivalent parameters (parameters inferable from such section) and length or net weight of fiber or bar.
	- For fibers or bars made of smaller fibers.	- Section/fiber, quantity of fibers and length or net weight of fiber or bar should be shown.
	- For covered fibers or bars.	- Thickness of cover should be added.
11	Pipelines.	Outer and inner diameters or thickness and length of pipelines.
12	Fishing nets.	Stretched length, stretched width or number of meshes by length and net weight.
13	Machines, equipment, tools, appliances	Sizes of the mass of products or goods.

Appendix II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POINTS OF TIME FOR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Category of goods	Goods items	Way of presentation
Food	Agricultural products, grains	Harvest or date of packing
Medicines for human use	Medicines for human use.	Date of start of manufacture.
	- For medicines prepared according to prescriptions.	- The date of prepa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Plant protection drugs	Plant protection drugs.	Date of processing or bottling or packing.
Plant seeds; animal breeds	Plant seeds, animal breeds	Date of ex-work or delivery for sale.
	Artemia eggs	Date of canning.
Petroleum products	Accompanying gas and other hydrocarbon gases	Date of ex-work inspection

Appendix III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INGREDIENTS AND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Category of goods	Goods items	Way of presentation
Foodstuffs	Aquatic foodstuffs: if added with other materials, foodstuff additives.	Ingredient quantities of other materials and foodstuff additive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Foodstuff additives	Foodstuff additives.	
	- If there are two or more additives in a single pack.	- All the weights of additives should be shown in the order of their ratios.
Animal feeds	Aquatic animal feeds.	Principal ingredient quantities.
	- If added with non-nutrients.	- Ingredients of non-nutrient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synthetic feeds.	- Protein, lipid, ash contents, fiber, humidity and absorbability level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supplementary feeds.	- Contents of supplementary substance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Pharmaceutical materials	Pharmaceutical materials.	Content or concentration of active substances.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used in veterinary medicine	Veterinary drugs.	Ingredients, ingredient quantities of active substances.
Veterinary drugs and biologicals used in aquaculture	Aquatic resource protection drugs.	Composition formula or composition.
Plant protection drugs	Plant protection drugs.	Ingredient quantities of main active substances, content of solvent (if solvents increase toxicity or physic nature).

Textile, garment, leather and footwear products	Garments.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of material.
	- For multi layers.	-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of each layer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Wood furniture	- Sawn timber of the same species of tree.	- Name of species.
	- Sawn timber of different species of trees.	- Category of timber.
	Household wood products	- Name of timber.
Metallurgical products	- Steel.	- Steel mark.
	- Metal.	- Category and purity(% of metal).
	- Ores	- Ore content(% of weight)
Petroleum products	Accompanying gas and other hydrocarbon gases	Gas composition (% of volume).
Chemicals	Chemicals.	Chemical formula, composition formula, composition.
	- For chemicals contained in pressurized containers	- Containing capacity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Fertilizers	Fertilizers	Ingredient quantity.
Industrial explosives	Industrial explosives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affecting the usage value.

Appendix IV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OF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Category of goods	Goods items	Way of presentation
Foodstuffs additives	Foodstuff additives.	- The phrase "Used for foodstuff" should be shown.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used in veterinary medicine	Veterinary drugs.	Main effects, side effects, registration number, manufacture lot number and the phrase "Only for veterinary use"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schedule-A toxic substances.	- The phrase "Do not overuse prescribed dosage" (in black)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schedule-B toxic substances.	- The phrase "Do not overuse prescribed dosage"(in red)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drugs for external use.	- The phrase "For external use only"(in black)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Plant protection drugs	Plant protection drugs.	Use registration number, quality control number (KCS), information on toxicity, warnings and instructions on prevention of intoxication, instructions on treatment upon intoxication.
Plant seeds; animal breeds, aquatic seeds	Seedlings subject to grade classification	The grade of seedlings should be shown.
	Aquatic plant seeds	Length, diameter of main trunk, growth stage.
	Animal breeds.	Grade of breed, yield indicator typical of the breed.
	- For egg-oriented poultry.	- The egg yield per year should be additional shown.
	- For meat-oriented poultry.	- The gained weight per unit of time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pork-oriented pigs.	- The weight gain capability, amount of feeds and thickness of back fat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For sows.	- Number of piglets per brood and number of broods per year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Aquatic animal species:	
	- Reared species.	- Number of age days, length of breeding animals.
	- Artermia eggs.	- Quantity of eggs per gram, ratio of hatched eggs (%).
	Parental breeds.	- Weight (g), reproductive stage.
Metallurgical products	- Alloy	- Typical indicators for identification, which are decisive to the use purpose.
Fishing gear	- Fishing nets.	- Color, fineness (tex), strength(N), mesh size.
	- Fishing yarns and ropes.	- Diameter, fineness tex), strength(N) twistedness(twists/m).
Chemicals	Chemicals.	Typical quality indicators.
	- For chemicals which are inflammable, toxic, corrosive.	- Relevant warnings should be shown.
	- For chemicals contained in pressurized containers.	- The code of container, containing capacity, loading person and hazard warning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Fertilizers	Fertilizers.	
	- For micro-organic fertilizers.	- The category and quantity of microorganism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Industrial explosives	Industrial explosives	Principal quality indicators and usability in industrial activities.

THE END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 주요국 진출 국내기업 애로 현황 보고서」 (2011. 2)
-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2011. 2)
-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1」 (2011)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1. 3)
- 국가정보원, 「동남아 사회·문화 바로알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편」 (200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10.1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 (2010.6)
- 외교통상부 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2011.11)
- 제25회 코참 포럼 자료, 베트남 수출입 통관 실무(2009)
-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
-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호치민, 하노이)KBC, www.kotra.or.kr
-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http://vnm-hanoi.mofat.go.kr>
- 주 베트남 유럽 상공회의소, www.eurochamvn.org
- 베트남 관세총국, www.customs.gov.vn
- 베트남 무역진흥청, www.vietrade.gov.vn
- 베트남 통계청, www.gso.gov.vn
- 세계은행, www.doingbusiness.org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 미국 무역 대표부, www.ustr.gov
- 전 세계 양자협정현황, www.bilaterals.org

법률회사 베이커앤메킨지, www.bakermckenzie.com

미국 농업국, <http://gain.fas.usda.gov>

동나이 세관 홈페이지, www.dncustoms.gov.vn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주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 www.eurochamvn.org

ASEM Connect, <http:// asemconnectvietnam.gov.vn>